2019 인천문화재단 문화정책 기획·연구과제 3

인천예술인 실태조사 관련 사전 연구

- 예술인복지의 필요성과 유휴공간의 예술적 활용에 대한 고찰 -

2019. 12.

IFAC 인천문화재단

【 연 구 참 여 자 】

1. 연구참여자

1) 인천형 예술인복지 제언 : 채은영 (임시공간 대표 / 독립 큐레이터)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 발제)
2) 유휴공간 예술적 활용의 필요와 의의 : 공주형 (한신대학교 평화교양학부 교수)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 발제)
3) 예술인복지 관련 자료조사 : 김선유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4)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운영 : 임원시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 과장)
5) 연구보고서 정리 : 공규현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2.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위원

No.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고
1	공주형	한신대학교 평화교양학부 교수	위원장
2	장한섬	플레이캠퍼스 대표	간사
3	문계봉	(사)인천민예총 이사	
4	이재상	극단 미르레퍼토리 대표	
5	조화현	i-신포니에타 대표	
6	박혜경	인천예총 이사	
7	유세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8	채은영	임시공간 대표 / 독립큐레이터	
9	안희석	루체뮤직소사이어티 대표	
10	김성경	공연연출가	
11	우사라	부평구문화재단 공연사업팀	

제1장 연구개요 및 추진방법

1. 추진개요

가. 사 업 명 : 2019 문화정책 기획·연구

나. 내　　용 : 인천예술인실태조사 관련 사전 연구

- 예술인복지의 필요성과 유휴공간의 예술적 활용에 대한 고찰 -

다. 세부내용

〈문헌조사〉

○ 예술인복지 정의 및 필요성 정리

〈사례조사〉

○ 유관기관 예술인복지사업 사례

○ 인천 지역 유휴공간의 예술적 활용사례

〈의견수렴〉

○ 분야별 예술인 간담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는 2020년에 '인천예술인복지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예술인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유관기관의 사업시행사례, 예술인들의 창작활성화에 필요한 '유휴공간의 예술적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관련하여 2018년에 인천시 문화예술과 의뢰로 인천연구원에서 진행한 '2018 인천예술인복지플랜' 연구결과를 검토하였으며, 인천 예술인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예술인실태조사 결과가 일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함.

○ 더불어 2020년에 '인천예술인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형태로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이에 2020년에 '인천예술인복지정책' 수립하기 위해 시행될 '인천예술인실태조사'에 필요한 사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예술인복지의 정의 및 필요성 검토
- 예술인복지 관련 최근 논의 및 연구결과 검토 (기본소득 논의 등)
- 예술인복지 및 유휴공간의 예술적 활용 관련 사례조사

3. 추진내용

가. 예술인복지의 정의 및 필요성

○ 예술인복지의 정의

○ 예술인복지의 필요성

나. 예술인복지 관련 연구 및 법률 제정 논의 현황

○ 예술인복지 관련 연구 현황 (기본소득 논의 등)

○ 예술인복지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다. 예술인복지 및 유휴공간의 예술적활용 관련 분야별 의견수렴

○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분과회의

○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FGI

○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

○ 분야별 예술인 간담회 개최결과

라. 사례조사 : 예술인복지 사업 및 유휴공간의 예술적 활용사례

○ 예술인복지 관련 사업시행사례

○ 유휴공간 관련 사업시행사례

제2장 예술인복지의 정의 및 필요성

1. 예술인복지의 정의

1) 예술인복지 정책 [1)]

○ 예술인복지정책은 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복지 정책임.

- 「예술인복지법(법률 제13970호)」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17일 제정되고 2012년 11월 18일 시행됨.
- 예술인 계층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기반 마련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재생산 구조 구축, 직업인으로서 예술인 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 해결,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불충분성 요인의 극복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음.

2)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의 정의[2)]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서는 '예술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한 자'를 말하며, '직업'으로서 수입 획득을 목적으로 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자를 의미함.

- '예술인'의 경우 예술 창조 자체를 목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전업 예술인도 존재하며, 경제적 목적의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수입의 양만을 기준으로 하여 "업으로서 예술 활동"의 한계를 규정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도의 기준을 필요로 함.

---

1) 부산문화재단(2018), 「부산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 복지 만족도 최종보고서」, pp.21-22.
2) 문화체육관광부(2012),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pp.39-41.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 12개 분야를 말하며,‘예술 활동’이란 12개 분야에서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제한됨.

- 예술 활동 분야에 따른 예술인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의 12개 분야 가운데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과 결합되는 영역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의 10개 분야로 볼 수 있음.
-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이라 함은 그 활동의 특성에 따른 분류 가능한데, 이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기술 지원 스태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과 실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의미의‘예술인’에 해당하며, 작가나 화가, 작곡가 등과 같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창작예술가(creative artist)’와 이미 창작된 작품을 연기나 연주 등을 통해 재현하는‘실연예술가(interpretive artist)’로 구분됨.
- “기술 지원 등”에서 “등”에 해당하는 분야로는 ‘기술 지원’과 같이 직접적인 예술활동참여자는 아니지만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기획 스태프, 예술 교육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예술의 생산과 유통에는 ‘예술인’ 외에도 기술 스태프, 기획·경영 스태프 등 다양한 인력군이 존재함.
-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만이 아니라 기술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등”자를 통해 기획·경영 스태프도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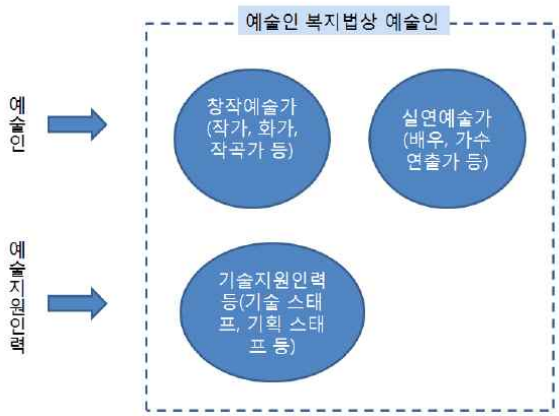

【그림 1】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의 범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p.41.)

2. 예술인복지법과 문화비전2030

1) 「예술인복지법」의 제개정 현황 3)

(1) 「예술인복지법」의 제정 (2011)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증진 및 예술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함.

○ 예술인의 정의, 지위와 권리, 예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2) 「예술인복지법」 1차 개정 (2013)

○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려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포함함.

-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제4조의2 신설)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제7조2항신설)
-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제6조의2,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의 법적 근거 마련(제10조의2제1항 신설

(3) 「예술인복지법」 2차 개정 (2016)

○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용역의 경우에 서면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이를 보완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불공정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의 구체적 기간으로 명시(제4조의2)

3) 부산문화재단(2018), 「부산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 복지 만족도 최종보고서」, pp.33-36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서면계약을 필수화하고 계약서에 적어야할 사항을 명시함(제4조의3 신설)
-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제6조의2,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변경하고, 불공정행위 위반여부 사실관계 조사 권한 확대(제6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3 신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및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제10조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4)「예술인복지법」3차 개정 (2018.4)

○ 문체부 장관이 예술인 복지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할 때, 예술인의 신청편의를 위하여 서류를 받는 대신 국가 전산망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예술인 또는 가구원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에게 예술인 또는 가구원의 관련 자료 요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제15조의3,제15조의4)

(5)「예술인복지법」4차 개정 (2018.10)

○ 문화예술계의 미투운동 등을 통하여 예술인의 직업특성상 인격모독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축소되는 상황이 드러남. 예술인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이에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책 마련 및 지원사업 추가함으로 열악한 환경의 예술인의 권리보장

에 기여하고자 함.

- 예술인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보장 명시(제3조제2항,제2항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제3항 신설)
-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추가(제6조의2제제1항제1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추가(제10호제1항제10호 신설)

(6)「예술인복지법」5차 개정 (2019.12)

○ 예술인 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된 계약의 서면체결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계약서의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4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4제4항 신설).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 (제5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4 신설).

2) 예술인복지정책의 현황

(1) 문화비전2030 [4)]

○ 문재인 정부의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이라는 기본 가치를 원리로 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의 3대 방향성 설정함.

- '개인의 자율성 보장'에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확대', '성평등 문화의 실현'이란 의제가,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이란 의제가, 그리고 '사회의 창의성 확산'에는 '문화자원의 융합역량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란 의제가 포함됨.

○ 「문화비전2030」은 3대 가치, 3대 방향, 9대 의제를 기본 골격으로 47개의 대표과제와 186개의 추진과제들을 제시함.

-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의제2〉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의제3〉 '성평등 문화 실현', 〈의제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의제6〉 '지역 문화분권 실현', 〈의제7〉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의제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렵력 확대', 〈의제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 있음.

○ 「문화비전2030」9대 의제 중 〈의제2〉는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것으로 4개의 대표 과제로 구성되며,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생존 기반인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해 보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하며, 제도적 실천으로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의 토대를 다지는 문화정책 수립을 목표로 함.

○ 〈의제2〉의 대표과제는 4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문화예술인·종사자(예술·스포츠·관광·콘텐츠 분야) 노동권·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충','예술인 복지 통합정책 지원체계 수립','자율성과 협치 중심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원체계 혁신'으로 이루어짐.

---

4)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 - 의제2 >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의제	**세부내용**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제도 기반 강화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문화권 확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인·종사자 노동권·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충	문화예술인·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 운영 예술인 직업분류와 취업기준 차별화 추진 저작권제도 개선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관한 인식 제고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협력체계 구축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예술가의 직업훈련·직업개발 여건 개선과 지원정책 도입 미성년 예술가와 신진 예술가의 보호와 지원 법제화 스포츠인권 전담기구 운영과 스포츠 복지제도 강화 문화예술계 위계폭력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마련
예술인 복지 통합정책 지원체계 수립	예술가들을 위한 연금제도와 의료지원정책 마련 예술인고용보험 도입과 예술인복지센터 개소 범정부 차원의 예술인복지 정책 활성화 예술인 창작주거 연계 복지 확산 (가칭)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개선 스포츠인의 복지증진 기반 마련
자율성과 협치 중심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원체계 혁신	문화행정·현장 문화예술인의 협치 기반 조성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표 1】 문화비전 2030 〈의제 2〉

< 문화비전 2030 – 의제 3 > 성평등 문화 실현	
의제	**세부내용**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계·체육계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 구제 관련 법제화 추진 분야별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활용 분야별 성차별·성폭력 신고 및 피해자 보호·지원센터 설치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분야별 성평등 계약지침 마련 및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 반영 의무화 성차별·성폭력 ·위계폭력의 적극적 공적 배제와 규제 정책의사결정과 정책사업에서 성평등 제도화 분야별 성평등 고용 실현과 여성인력 처우개선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등 각 분야 여성활동 활성화 지원 여성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인식 제고 문화정책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조직·재원 확보

【표 2】 문화비전 2030 〈의제 3〉

○ 「문화비전2030」9대 의제 중 〈의제3〉은 성평등 문화 실현에 관한 것으로 3개의 대표 과제로 구성되며, 문화생태계 전반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적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선순환 지향을 목표로 함. 〈의제3〉의 대표과제는 3가지로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으로 이루어짐.

3. 예술인복지의 필요성

(1) 예술인 경력단절 이유 1순위 : "예술활동 수입 부족"

○ 예술인 중 23.9%는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2018년 기준), 예술 활동을 포기한 이유로는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6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예술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3.9%, 예술경력 단절 기간은 '1년'이 4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분야별로 살펴보면 만화(48.3%), 영화(43%), 연극(36.7%), 대중음악(30.1%), 음악(23.9%), 무용(21.2%), 문학(21.1%), 미술(20.3%), 국악(14.1%), 공예(11.7%), 기

타(11.6%)순으로 나타남.

- 예술 활동을 포기한 이유로 '예술활동 수입 부족'(68.2%), '질병'(7.3%), '출산/육아'(7.2%)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인의 개인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이 '없음'이 28.8%, '500만원 미만'이 27.4%를 차지함.

예술인 경력단절 경험 및 기간(단위,%)							
	예술경력 단절경험		예술경력 단절 기간				
구분	있음	없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비율	23.9	76.1	47.1	22.2	12.5	4.9	13.3

예술인 경력단절 이유 (단위,%)					
구분	예술활동 수입 부족	질병	출산/육아	학업	기타
비율	68.2	7.3	7.2	5.8	11.6

지난 1년간 예술인의 개인 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 (응답자=4,800, 단위,%, 만원)									
구분	없음	5백만원 미만	5백~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2~3천만원 미만	3~4천만원 미만	4~5천만원 미만	5~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비율	28.8	27.4	10.7	13.2	7.4	4.4	2.0	1.3	4.7

【표 3】 예술인 경력단절 이유 및 예술활동 수입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실태조사)

(2) 예술활동의 고용형태 : 전업예술인 57.4%, 겸업예술인 42.6%

○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예술활동 직업)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체)'가 3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이 19.8%를 차지함.

○ 겸업 예술인(Part time job)의 고용형태(예술활동 직업)는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이 2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체)'가 24.3%를 차지함.

○ 겸업 예술인의 고용형태(예술관련 직업:교수, 강사 등)는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이 4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파트타임/시간제'는 25.5를 차지함.

○ 겸업 예술인의 고용형태(비예술 직업)은 '파트타임/시간제'가 2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이 21.3%를 차지함.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예술활동 직업)							
구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 인 사업체)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파트타임 /시간제	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기타
비율	36.8	19.8	7.0	7.0	6.4	3.7	19.4

겸업 예술인의 고용형태(예술활동 직업)							
구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 인 사업체)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파트타임 /시간제	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기타
비율	24.3	24.9	12.5	3.5	3.6	2.9	28.3

겸업 예술인의 고용형태(예술관련 직업: 교수, 강사 등)							
구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 인 사업체)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파트타임 /시간제	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기타
비율	5.8	46.7	25.5	10.3	2.3	2.9	6.4

겸업 예술인의 고용형태(비예술 직업)							
구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 인 사업체)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파트타임 /시간제	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기타
비율	5.8	46.7	25.5	10.3	2.3	2.9	6.4

【표 4】 전업예술인 및 겸업예술인의 고용형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실태조사)

(3) 겸업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종사 이유 1순위 :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 겸업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중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이 27.1%,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이 10.7%로 나타남.

겸업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구분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기타
비율	46.5	27.1	10.7	2.4	13.3

【표 5】 겸업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종사 이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실태조사)

(4)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 계약체결 경험자 42.1%, 부당계약 경험률 9.6%

○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은 42.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계약 중 서면계약은 37.3%,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은 4.8%를 차지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극(71.5%), 만화(71.5%), 영화(69.1%)분야에서 계약 체결 경험율이 높았고, 계약 체결 경험자 중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 경험율이 높은 분야는 방송연예(10.1%), 연극(7.7%), 음악(6.5%) 순으로 나타남.

○ 계약 체결 경험자 중 '부적절·부당한 계약내용이 있다'는 응답자는 9.6%임.

- 부적절·부당한 계약 내용으로는 '일방적/부당한 임금 규정/낮은 임금'이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확실/불합리한 업무 규정'이 27.0%, '임금 미지급/체납'이 18.6%로 나타남.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단위,%)			
구분	경험 있음	계약형태	경험 없음
		서면계약	서면계약없이 구두계약
비율	42.1	37.3	4.8	57.9

부적절·부당한 계약 여부 및 계약 내용 (단위,%)									
구분	부적절·부당한 계약 여부			부적절·부당한 계약 내용<복수응답> (부당 계약 경험자=202)					
	예	아니오	합계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규정/ 낮은 임금	불확실/ 불합리한 업무 규정	임금 미지급/ 체납	일방적이고 부당한해고/ 계약해지	저작권 침해/ 구분 모호	기타
비율	9.6	90.4	100.0	50.7	27.0	18.6	12.6	8.0	0.7

【표 6】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자 및 부당계약 경험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실태조사)

(5) 예술인의 개인 창작공간 보유 : "보유하고 있음" 49.5%

○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 보유 응답은 49.5%로 나타남.

- '집 안에 창작공간 보유'한 경우 22.5%, '집 밖 별도 공간에 보유'한 경우는 27.0%로 나타남.

○ 개인 창작공간의 크기는 평균 47.9㎡로 나타남.

- 개인 창작공간의 크기는 '20㎡ 미만'이 37.3%로 가장 많았고, 개인 창작공간의 보유 형태는 '월세'가 44.5%로 가장 많았음.

개인 창작공간 보유 현황				
구분	있음	형태		없음
		집 안 공간	집 밖 공간	
비율	49.5	22.4	27.0	50.5

개인 창작공간 크기 및 보유형태										
구분	20㎡ 미만	20~35㎡ 미만	35~70㎡ 미만	70~100㎡ 미만	100~150㎡ 미만	150㎡ 이상	자가	임대 -전세	임대 -월세	무상 임대
비율	37.3	19.4	21.9	10.6	6.2	4.6	37.3	13.5	44.5	4.7

【표 7】 개인 창작공간 보유현황 및 보유형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실태조사)

(6) 예술인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과 실업급여 수혜 경험

○ 예술인의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24.1%이며, 실업급여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5%임.

- 예술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3.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산재보험 가입률 27.0%, 고용보험 가입률 24.1%로 낮게 나타남.
- 예술인 중 실업급여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5%로 매우 낮게 나타나며, 실업급여 수혜 금액은 100~150만원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50~100만원 미만은 40.1%로 나타남.

예술인의 사회보험 (공적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률				
구분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율	53.0	93.5	27.0	24.1

예술인의 실업급여 수혜 경험		
구분	있음	없음
비율	2.5	97.5

예술인의 실업급여 수혜 금액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비율	6.6	40.1	53.3

【표 8】 예술인의 공적연금 가입률 및 실업급여 수혜경험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실태조사)

(7) 예술인의 낮은 공적연금 수급률

○ 예술인의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해당없음'은 85.2%, 노령연금 수급에 대한 '해당 없음'은 62.1%를 차지함.

- 예술인의 공적연금에 가입한 53% 중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예술인의 공적연금 수급				
구분	기초연금 수급		노령연금 수급	
	해당	해당 없음	해당	해당 없음
비율	14.8	85.2	37.9	62.1

【표 9】 예술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실태조사)

Ⅲ. 예술인복지 관련 연구 및 법률 제정 논의 현황

1. 예술인 고용보험

(1)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법률 발의 및 국정과제 채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고용노동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와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당사자의 희망에 따른 적용제외를 허용하고, 예술인은 임의가입으로 운영하여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 또한, 「고용보험법」 내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으나, 선진국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점차 확대하고 있음.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자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속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사회적,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5)]

○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2016년에 제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한정애 의원 등 11인의 의원은 6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 (의안번호-2000588 및 2000589, 제안일자 2016. 06. 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6)]

- 〈제안이유〉
-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6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또 다른 주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는 가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72.7% 수준으로 경제적으

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18), 「고용보험법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재정리하여 인용
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로 열악한 처지에 있으며, 사업주의 계약해지로 인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임.

- 〈주요내용〉
-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 예방과 고용촉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13조의 3 신설).

○ 2016년 9월에는 장석춘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 (의안번호-2002513 및 2002515, 제안일자 2016. 09. 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7)]

- 〈제안이유〉
- 예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반면,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실업을 당한 경우 생활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예술인이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요건 기초일액, 구직급여 일액, 소정급여 일수, 피보험기간의 합산, 수급자격의 제한, 기타 근로자 구직급여 관련 조항의 준용 등 구직급여 관련 조항들을 규정함(안 제50조제3항 및 제4항제2호, 제69조의3 제1호 및 제3호, 제69조의4제1항제1호, 제69조의5, 제69조의6, 제69조의7제1항 및 제2항의 신설, 제69조의9제1항)
- 나.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정은 자영업자 실업급여계정에 통합 운영함(안

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4인)」

제82조제2항)

- 다.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예술인은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호, 제2조제1호나목 및 제2호, 제10조제1호)

○ 두 가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의 위험에 처해있는 특수공용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내용과, 역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예술인들이 실업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관한 의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정식으로 채택되어,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다섯 가지 목표 중 두 번째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의 19번 과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로 발표하게 됨.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함. [8)]

○ 2018년 11월에 한정애 의원 등 11인의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함. (의안번호-2016361 및 2016373, 제안일자 2018. 11. 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9)]

- 〈제안이유〉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2016361)
-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8) 대한민국 정부(201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출처 :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evaluation.go.kr/psec/np/np_2_1_2.jsp
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의무가입토록 하고,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5조,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일할 계산, 보험료의 원천 공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3, 제16조의4 삭제, 제16조의6, 제16조의9, 제16조의10, 제21조).
- 다.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 신고제도 폐지,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신설 및 제3호,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33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4).
- 주요내용(2016373)
- 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8조제1항 신설, 제9조 신설).
-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
-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8조).
-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2).
-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피보험 자격확인 등을 위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요청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08조,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신설, 제118조).
- 마.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

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54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9조의3제1호, 제69조의6, 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제87조, 제105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2제4항, 제116조).

(2) 〈관련 연구〉 공연예술분야 근로조건 실태조사 [10)]

○ 2018년에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공연예술분야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 연극분야를 중심으로」는 공연예술분야 중 특히 연극분야에 종사하는 연극인(배우, 연출가, 제작자, 기술스태프 등)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공연예술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연예술분야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 분석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함.

○ 미국은 문화예술 관련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으며, 예술인들의 고용형태도 비교적 체계가 잘 잡혀있음. 미국에서 예술인들은 일반적으로 독립도급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며, 예술인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연방법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음. 하지만, 직종별 조합 또는 협회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 예술인들이 고용주들과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노동조건을 보호받고 있음.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가 아닌, 문화예술산업 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업종의 특성에 맞는 노동규범을 만들어서 예술인들을 비교적 안정된 노동조건으로 보호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술인이 자영업자에 가까운 독립도급업자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합 또는 협회 등을 통해 단체협약 사항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서 일정 수준의 노동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예술인들의 위상이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그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술인들이 4대 보험 가입비율이 매우 낮아,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수행시 노동조건을 보호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비한 상황임.

10) 김현호 외 4인(2018), 「공연예술분야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 연극분야를 중심으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재정리하여 인용

○ 2016~2017년 2년 동안 1년 간 연극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은 평균 약 250만 원에 불과하며,(2016년 246.59만원, 2017년 256.86만원) 연간 총소득 중 공연예술과 무관한 직업에서 얻은 수입이 38.8%에 해당한다고 답함. 즉, 예술인들은 예술활동과 전혀 무관한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임.

○ 예술인들의 연간 총소득은 2016년의 경우 500만원 ~ 1000만원 미만이 29.09%, 500만원 미만이 20.61%, 1000만원~1500만원 미만이 18.79%. 2017년의 경우 500만원 ~ 1000만원 미만이 30.23%, 500만원 미만이 23.26%, 1000만원~1500만원 미만이 15.70%. 두 해 모두 약 70%가 1년 동안 15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함.

○ 예술인들의 평균적인 1년 간 총수입은 약 1,195만 원(2016년 1,194.35만원, 2017년 1,195.29만원)이며, 이는 최저임금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예술활동 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예술활동과 다른 일을 병행하더라도 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작품 출연 당시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가입되었다'고 답변한 비율이 20.45%, '가입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비율이 79.55%로 조사됨. 특별히 연극 분야 직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 185명 중 185명 전체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답함. 또한, 2017년 총소득에서 실업급여의 비중이 0.24%에 불과하며, 연극 분야 활동 중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을 물었을 때 1.62%만이 수혜경험이 있다고 답함.

○ 본 조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0% 대이고, 예술활동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율이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18 예술인실태조사에서도 예술인들의 실업급여 수혜경험은 2.5%에 불과하여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세 가지로 조사함. 첫 번째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게 한 후, '실업급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대안에 대해서 76.61%가 찬성함. 두 번째 예술인을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에 '자유가입'하도록 한 후, '실업급여'만 적용하는 대안에 대해

서는 39.39%만 찬성하고 60.61%는 반대함. 세 번째 예술인은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만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에 대해서는 71.02%가 찬성함. 즉, 예술인들은 첫 번째 안과 같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의무가입을 통한 고용보험 혜택 적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 안에서처럼 예술인만의 특별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높은 선호를 나타냄. 그러나 두 번째 안과 같이 예술인을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권장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종합하여 보면, 공연예술인 특히 연극분야 종사자들은 '실업급여 수혜' 측면과 부당한 노동조건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원하는 측면 등에서는 '근로자성'이 강하게 나타남. 그러나 일부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교차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부정적인 측면은 프로젝트 단위의 계약과 창의적인 예술노동의 특성 그리고 경제적 영세성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정책적으로 공연예술분야 실연 및 기술지원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노동법상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상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의 '근로자' 지위 인정과 더불어 고용보험 의무가입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고용직을 분류하여 임의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가입률이 10% 내외로써 미미함. 산재보험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여 그 손해지출액을 보전받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생명 및 신체 안전 그리고 실업(고용안정)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 취업자 계층이 사회보험에서도 낮은 가입률을 보여주는 것은 사회보험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였다고 말할 수 없음.

○ 따라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을 포함한)은 자영업을 제외한 전체 노동시장의 취업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인 역시 이에 해당됨. 산재보험의 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과 동일한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료 역시 종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특례와 달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과해야 함.

○ 또한, 실업급여수급 중의 일시취업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혹은 상실, 혹은 부분실업급여 지급 시 유지되는 피보험자격은 현재 수급 중인 급여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관련 규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국회 동향〉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및 처리현황 [11)]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이 포함됨. 당시 정부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 이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18년 11월 발의함.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68 :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예술인복지 강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

【표 10】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출처 :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 ·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피보험 자격확인 등을 위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요청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 바.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 정비

【표 11】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출처 : 국회 홈페이지)

11)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2019.12.24., 「동력 잃은 국정과제...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제자리걸음'」. 재정리하여 인용.

○ 법안이 발의된 지 오래 되었으나, 2019년 12월말까지 환노위에서 논의되지 못함.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된 점을 감안할 때, 제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임.

(4) 〈기관 동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복지위원회 사회보험확대소위원회 [12)]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위원회 사회보험확대소위원회(사회보험소위)를 구성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사회보험소위는 현장 전문가 2명과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에는 현린 노동당 대표 겸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음.

○ 사회보험소위는 2019년 8월 1차 회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주요 의제로 제시함. 2차 회의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당연가입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의함. 예술인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당연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임. 사회보험소위의 이러한 논의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같음. 즉, 문화예술용역을 목적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2019년 3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당연히 적용하는 내용으로)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고 발언함.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므로 현행 자영업자처럼 임의가입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하여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냄.

○ 경영계에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적용하거나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임의가입 방식을 주장하고 있음. (임의가입은 예술인들이 원

12)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2019.12.24., 「동력 잃은 국정과제...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제자리걸음’」. 재정리하여 인용.

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 특히 예술인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경영계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 과도하다고 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음.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업무 방식이나 근무시간에 관여하지 않으며,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다.”는 입장을 나타냄. 일반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관리·감독 범위, 이익 배분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

○ 한정애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18년 보험료율 1.3%(현재 1.6%)를 기준으로 사업주 측이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2020년에만 약 988억 원으로 추산됨.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정애 의원 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임. 같은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주 측이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은 약 5,4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산출됨.

○ 예술인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술인들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편입한다 하더라도, 모든 예술인을 보호하기에는 고용보험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입·퇴사 여부에 따른 실업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데도 이를 근거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하지만 예술인들의 대부분은 근로계약 관계가 명확하다고 볼 수가 없음. 예술인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계약 관계 또는 실업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함. 프리랜서는 근로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일감 중심으로 일이 진행돼 소득 수준도 일정하지 않으며 일 하는 기간도 명확하지 않아 현재의 고용보험에서 정의하는 실업상태와 개념이 명확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즉, 프리랜서 예술인이 하나의 일을 마치고 다음 일을 알아보거나 예술활동을 준비·연습하는 기간을 실직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 현재 계류 중인 한정애 의원 안도 예술인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한정애 의

원 안은 문화예술용역을 목적으로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구두계약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예술계에서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협상력조차 낮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서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직 높지 않은 상황임. 한정애 의원 안도 최소한 서면계약을 맺고 조금이라도 종속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고용보험에 포섭될 수 있는 방식임.

○ 사회보험소위 내의 논의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주장이 나옴. 즉,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글을 쓰는 작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혼자 기획하고 글을 쓰는 작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

○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린 노동당 대표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노동자에게만 해당되어야 하며, 순수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까지 사회보험으로 보호하겠다고 하는 순간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식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현린 대표는 “직업으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순수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즉, 예술인도 노동자로 보아,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계약을 맺고 예술노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임. 즉,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최대한 고용보험 틀에 넣고,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자영업자 성격이 더 강한 사람들은 별도의 예술인 사회보험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예술인의 처우 및 창작환경 개선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13)]

○ 2019년 하반기에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24건의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짐. 이 중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이 개정되어 예술인의 처우 및 창작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예술인복지법, 저작권법)

13) 문화관광체육부 보도자료, 2019. 12. 2.「예술인 복지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1) 예술인복지법 : 예술인 권리 증진, 공정한 예술 생태계 기반 조성

○ 개정내용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의무 관리·감독 규정 마련
- 예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예술업계는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아('18년 기준 76%)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사항을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개정안이 2019. 12. 03.에 통과.

○ '문화예술용역'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법 제2조)하고,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의무(3년)를 신설.

○「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등의 경우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2)

2) 저작권법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를 통한 창작시장 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 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창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

○ 그동안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과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 명문화,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허락 거부 금지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 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김.

Ⅳ.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추진경과

1.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분과회의

○ 추진개요 :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운영

○ 운영기간 : 2019년 7월 ~ 11월 (총 14회 / 분과회의 12회, FGI 2회)

○ 참 여 자 :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위원 11명 및 재단·인천시 관계직원

○ 추진내용

-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에서는 '예술인복지'와 '유휴공간의 예술적활용'을 핵심의제로 하여 분과 토론을 진행하였음.
- 분과 전체 회의와 별도로 '예술인복지'와 '유휴공간' 관련 소분과 회의를 운영함.
- '예술인복지'와 '유휴공간' 관련한 예술인 FGI 2회를 추가로 진행함.

회차	구분	일시	안건
1차	1차 분과회의	7. 3.(수) 10:00	○ 위원장 및 간사 선출(위원장:공주형, 간사:장한섬) ○ 2019년 분과 의제(안) 논의
2차	2차 분과회의	8. 7.(수) 10:00	○ 분과 의제 및 소분과 구성 - 의제1) 인천예술인 복지, 의제2) 유휴시설의 예술공간 활용방안
3차	1차 소분과회의	8.12.(월) 17:00	○ 지역 예술인 복지 논의 - 주거, 일자리, 기금(기부금 포함), 연금 등의 다양한 복지방안 구상
4차	2차 소분과회의	8.19.(월) 17: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지영 팀장 초청 세미나 개최 - 예술인 복지관련 정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진행사업 등
5차	3차 소분과회의	8.21.(수) 14:00	○ ㈜몬스터레코드 공간 답사 - 해당공간 활용사례 소개, 유휴시설의 예술공간 활용방안 논의
6차	4차 소분과회의	8.27.(화) 17:00	○ (사)안산민예총 김태현 지회장 초청 세미나 개최 - 예술인 기본소득 제안, 안산의 예술인 복지사업 사례 등
7차	3차 분과회의	9.02.(월) 17:00	○ 분과 의제 관련 향후 진행일정 공유 - 예술인 복지관련 논의 경과 및 유휴공간 활용 진행계획 안내
8차	예술인 FGI 1차	9.20.(금) 13:30	○ 예술인 복지 관련 예술인 FGI 진행 - 개인기반 작가, 단체활동 예술가 그룹 인터뷰 진행
9차	5차 소분과회의	9.24.(화) 10:30	○ 인천연구원 최영화 박사 초청 세미나 개최 - 인천예술인 복지플랜 내용 발표 등
10차	6차 소분과회의	9.30(월) 17:00	○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논의결과 정리방향 논의
11차	7차 소분과회의	10.11.(금) 15:00	○ 인천 빈집은행 공간 답사 - 해당공간 활용방식 소개, 유휴시설의 예술공간 활용방안 논의
12차	8차 소분과회의	10.24.(목) 15:00	○ 부산 또따또가 김희진 센터장 초청 세미나 개최 - 해당공간 조성 및 운영 소개 등
13차	4차 분과회의	11. 8.(금) 10:30	○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 기획 및 운영 방향 논의
14차	예술인 FGI 2차	11.15.(금) 14:00	○ 유휴공간의 창작공간 활용관련 예술인 FGI 진행 - 개인기반 작가, 단체활동 예술가 그룹 인터뷰 진행

(1) 예술창작분과 1차 분과회의

○ 회 의 명 : 2019년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1차 회의

○ 회의일시 : 2019년 7월 3일(수) 10:00

○ 장　　소 : 인천문화재단 청사 회의실

○ 회의내용 : 예술창작분과 운영방향

○ 회의결과

- 인천 문화예술 현황을 검토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함
- 예술가는 창작자인 동시에 수요자로 바라봐야 함. 다만, 예술가의 장르 간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향이 있음.
- 문화포럼 내 타 분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술 코어 콘텐츠 생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필요가 있음. 제도적 지원체계는 콘텐츠 생산의 방법론적 도구로 활용돼야 함
- 현 인천 예술계가 과거부터 고착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를 발굴해야 할 것임.
- 예술지원과 정책을 타 국가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나 해당 정책이 인천의 예술적 토양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천의 기초 사례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임.
- 문예진흥기금 고갈 등 전반적으로 기초예술지원 예산이 축소될 우려 지점들을 지역문화예술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이 필요함
- 공공영역의 자본으로 인해 민간에서의 예술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빈번함. 오히려 공공은 예술활동 상 부재와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정부의 '사람'중심의 문화예술정책 수립 및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와 재단의 사업에서도'사람'을 키워드로 집행할 필요가 있겠음.

(2) 예술창작분과 2차 분과회의

○ 회 의 명 : 2019년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2차 회의

○ 회의일시 : 2019년 8월 7일(수) 10:00

○ 장　　소 : 인천생활문화센터 A동 2층 모임방3

○ 논의의제 : 기초예술 / 지원 / 예산 / 제도

○ 회의내용 : 2차 회의 의제 관련 발표

- 발표 1) 공규현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의 변화 방향 모색

- 발표 2) 김성경 (공연연출가)

유휴공간 활용 제안서 : “폐교를 활용한 가족 중심의 체험형 문화 예술 활동공간”

가제: 『인천 Art Factory 파밀리아』 유휴공간 활용 제안서

○ 회의결과

- 기초생활 보장과 공간 마련은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담보할 수 있음. 이런 차원에서 예술창작분과에서는 예술인복지와 예술공간을 의제로 설정하고자 함.
-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기관은 독립 재단 형태 혹은 문화재단 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설립돼 있음.
- 부산의 경우, 빈집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발굴, 매칭하는 반딧불이 사업이 있음.
- 인천 내 문화예술과 관련한 지표, 통계가 부족한 상황. 「2018 인천예술인 복지플랜」에서 제시한 실태자료는 인천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 현장상황과 일부 괴리가 있어 보이므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실태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예술인실태조사를 시행할 때 지표, 통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 할 것임.
- 현장 예술계와 정책입안자가 생각하는 ‘예술인복지’의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과 지표, 통계자료는 지자체 공무원보다는 재단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재단과 현장의 소통을 통해서 예술인실태조사 시행이 필요함.
- 예술인 실태조사 지표 구성을 위해 사전 연구가 필요할 것임. 분과에서 의견을 제안하면 현장의 의견을 받아 지표를 구성하는 사전 준비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임.
-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예산 구분에 있어 복지예산일지 예술예산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예술인 복지를 접근함에 있어 다른 명칭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음.

(3)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1차 회의

○ 회 의 명 : 2019년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1차 회의

○ 회의일시 : 2019년 8월 12일(월) 17:00

○ 장　　소 : 임시공간

○ 회의내용 : 지역예술인 복지

○ 회의결과

○ **예술가의 일상을 보호하는 제도 필요 : 주거(공간) 지원 가장 시급**

- 예술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예술가의 창작활동(작품활동)은 어떻게 구분해 줄 것인가
- 예술가의 생계 문제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 예술가 개인의 의식주를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술가들에게 가장 어려운 주거 및 창작공간 문제만큼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예술가들은 주거와 작업실 분리를 간절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음.
-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주거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예술가의 삶의 안정성이 커지게 됨.
- 최근에 '예술부동산'이라는 개념도 회자된 바가 있음.
- 유휴공간 고민을 할 때, "주거+매개"공간으로의 활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일자리 문제**

- 예술가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음. 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 이후 주목을 받은 것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예술가 파견제도'였음.
- 예술현장을 경험하면서, 생계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시급함.
- 미술 분야는 인천에 미술관, 갤러리, 전시장 등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듦. 인천은 사립미술관이 2개인데, 그나마 일을 해도 경력 인정이 되지 않음.
- 인천시청이나 각 구청에서 청년창업지원을 많이 하는데, 예술가들도 이런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 혜택의 문제**

- 예술가들이 재원마련에 필요한 기부금 확보를 위해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음.
- 서울처럼 예술가들이 기부금을 확보해 오면 인천문화재단에서 1:1 매칭을 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음. 서울의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해 기부금을 받으면

법인 기부자에게 5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인천의 기관을 통해 기부금을 받으면 법인 기부자에게 공제 혜택을 10% 밖에 줄 수 없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처럼 인천에서도 '예술가 파견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들과의 연계 네트워크 확보가 절실하며, 이런 부분은 개별 예술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임.

○ **예술인들의 연금 수혜**

- 프랑스는 60일 일하면(한 작품 활동기간 정도에 해당), 90일간 연금이 나옴. 이 제도 덕분에 1년에 2~3개 작품만 하면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
- 독일은 예술가들이 국가연금, 지역연금, 예술가연금 세 가지를 받아서 생활하므로, 생활에 문제가 없음.
- 미국은 실연자조합 및 작가조합 등이 잘 조직되어 있어서, 작품활동을 할 때마다 출연료(작가료)의 일정부분을 떼서 연금을 가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4)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2차 회의

○ 회 의 명 : 2019년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1차 회의

○ 회의일시 : 2019년 8월 19일(월) 17:00

○ 장　　소 : 인천생활문화센터 2층 모임방

○ 회의내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지영 팀장 초청 세미나

○ 발 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김지영 팀장

○ 발표내용 : 예술인 복지관련 정책의 흐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진행사업 현황

○ 회의결과 :

-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지역협력위원회'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를 거쳐 문체부에 사업화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중임.
-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과 협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 사회복지안전망이 튼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술인 복지를 논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예술인 복지와 결합하여 대상을 예술인으로 제안할 수 있지 않는가에 의견이 있음. 다만 예술인이 가진 잠재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합의되고 설득돼야 할 필요가 있음.

- 복지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잘사는 것에 관한 것이나 현재는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음.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가가치가 설득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연구조차 없는 실정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논의하는 예술인복지는 예술인 개인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체계의 허약함에 대한 것으로 설득하고 있는 상황임. 예술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도 설득하고 있음.
- 향후 인천형 예술인 복지 정책 및 사업 수립의 위해 중앙정부의 사업모델도 참고할 수 있겠으나, 인천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사업을 입안할 수 있을 것임.

(5)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3차 회의

○ 회 의 명 : 2019년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3차 회의
○ 회의일시 : 2019년 8월 21일(수) 14:00
○ 장　　소 : 까페 아비앙또 (계양경기장 내) *㈜몬스터레코드에서 운영하는 수익시설
○ 회의내용 :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간 방문
○ 장소소개 : 이강민 ㈜몬스터레코드 대표 (인천문화포럼 문화확산·활용분과 위원)
○ 회의내용 (몬스터레코드의 운영사례 / Cafe A Bientot)
- 미추홀구청에서 유휴공간 운영에 대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나 사업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거절한 적이 있음. 현 공간(계양경기장)은 비었거나 버려진 공간보다는 시설 면에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초기 도입비용도 적게 투입되었음.
- 특히 계양경기장은 주민들의 산책코스이며 주차공간이 잘 구비되어 있고 노출성이 높아 입주 전부터 관심을 가진 공간이었음. 입찰을 통해 공간을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카페운영을 위한 용도변경 등 오픈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음.
- 원래 몬스터레코드는 개인 사업자였으나 2013년부터 기획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 3월 사회적기업 양성과정을 거쳐, 4월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12월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총 9개월 만에 패스하였음(전국 최초 사례임. 사회적기업의 총 지원기간은 5년임, 예비 2년, 인증 3년). 몬스터레코드는 예비기간은 넘기고 곧바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하고 있음.
- 공공기금의 지원사업은 공익성을 추구하고, 일반 계약·입찰을 통해 수익사업을 진

행하면서 투 트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기업'은 중앙 혹은 지자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인천문화재단과는 달리 민간 영역에서 공공사업 수행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주식회사와는 달리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을 끌어가는 리더가 부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윤 배분에 있어서 문제와 충돌이 생길 수 있음.
- 인천은 예술가 중심의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문화적으로 쇠퇴한다는 생각을 해봄. 특히 재단에서 생산하는 사업들은 예술가 지원 중심이다 보니 기획자, 매개자 등 중간 역할자들과의 간극이 생겨버림. 예술창작의 영역과 기획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풍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됨.

(6)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4차 회의

○ 회 의 명 : 2019년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4차 회의

○ 회의일시 : 2019년 8월 27일(화) 17:00

○ 회의장소 : 인천생활문화센터 2층 모임방

○ 회의내용 : (사)안산민예총 김태현 지회장 초청 세미나

○ 발 표 자 : (사)안산민예총 김태현 지회장

○ 발표내용 : 예술인이 제안하는 예술인 기본소득

- 안산에서 논의 중인 예술인 복지관련 사례(방식)
- 지역에서 진행할 만한 예술인 복지사업(제안사항)

○ 회의결과

- 「안산 예술인 기본소득 제안」 발표
- 예술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필요성임. 예술활동만으로도 생계가 가능한 사회를 꿈꾸며 생각을 제안한 것이 예술인 기본소득임.
- 안산에서는 2018년 1월에 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슈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음.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범주형 기본소득(부분 기본소득)에서 청년 외에 예술가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음.
- 안산의 경우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증명발급이 가능한 예술가를 기본소득 지원 대상으로 한정함(행정적이긴 하나 법적 기준을 우선함. 월 50만원 / 지역화폐로 지급).
- 90년대 중반 안산 예술인마을(아파트)이 조성되어 초기 예술 축제 등 유입 요인들

이 있었으나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 소수로 구성된 예술인협동조합의 문제는'협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안산예술인협동조합(컬쳐75, 회비는 없으며 최초 출자금 5만원)에는 약 130여명의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협업이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남. 조합차원에서 진행한 예술인 공유토크 첫 번째 주제가 예술인 기본소득이었음.
- 2017년 경기도로부터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라는 예술인 입주공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을 받았음(40억). 청년예술인의 공유플랫폼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컬쳐75 조합유지의 동기가 되고 있음.

(7) 예술창작분과 3차 분과회의

○ 회 의 명 : 2019년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3차 회의

○ 회의일시 : 2019년 9월 02일(월) 17:00

○ 회의장소 : 인천생활문화센터 2층 모임방

○ 회의내용 :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소분과 운영 경과 및 향후 일정

○ 회의결과

- 유휴공간의 예술적 활용 관련 사항
  · 서울의 경우 창작공간이 생겨나면 그 숫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그 운영방식을 위탁방식이 아닌 미술관, 재단 등 해당 시설의 정체성이 맞는 곳으로 전문적 운영을 맡기는 형태임. 반면, 인천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예를 보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층적인 상황임. 오히려 인천의 창작공간을 많이 탄생시켜 서울처럼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운영주체를 만들어가는 방식도 고민해볼 만함.
  · 부산 또따또가의 사례, 김희진 센터장 초빙 세미나 진행 예정
- 인천문화포럼 분과위원의 경우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이해도가 있는 상황이나, 실제 지원이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음. 예술인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예정하고 예술인 복지 및 창작공간에 대한 현장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고자 함. 약 4~5명의 예술인을 추천받아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9월 말 공유하고자 함.
- FGI 진행은 예술인 복지 소모임장과 간사(혹은 분과위원장) 선에서 위원의 참여는 최소화하여 진행하고, 재단에서도 진행 인력 정도만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예정하여 질문지는 소모임장과 재단에서 협의 작성하여 타 분과위원의 회람을 통해 정리

(8)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5차 회의

○ 회 의 명 : 2019년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5차 회의
○ 회의일시 : 2019년 9월 24일(화) 10:30
○ 회의장소 : 인천생활문화센터 2층 모임방
○ 회의내용 : 인천연구원 최영화 연구위원 초청 세미나
○ 발 표 자 : 인천연구원 최영화 연구위원
○ 발표내용 : 「2018 인천예술인 복지플랜」 요약발표

(9)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6차 회의

○ 회 의 명 : 2019년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6차 회의
○ 회의일시 : 2019년 9월 30일(월) 17:00
○ 회의장소 : 인천문화재단 청사 회의실
○ 회의내용 :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논의결과 정리방향 논의

(10)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7차 회의

○ 회 의 명 : 2019년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7차 회의
○ 회의일시 : 2019년 10월 11일(월) 15:00
○ 회의장소 : 인천 빈집은행 (미추홀구 용현동 62-7)
○ 회의내용 : 유휴공간의 활용사례 공간 방문

(11)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8차 회의

○ 회 의 명 : 2019년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소분과 8차 회의
○ 회의일시 : 2019년 10월 24일(월) 15:00
○ 회의장소 : 인천생활문화센터 2층 모임방
○ 회의내용 : 부산 또따또가센터 김희진 센터장 초청 세미나
○ 발 표 자 : 부산 또따또가센터 김희진 센터장
○ 발표내용 : 부산 또따또가센터 운영현황 발표

(12) 예술창작분과 4차 분과회의

○ 회 의 명 : 2019년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4차 분과회의

○ 회의일시 : 2019년 11월 8일(금) 10:30

○ 회의장소 : 인천문화재단 청사 회의실

○ 회의내용 :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 기획 및 운영 방향 논의

2.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FGI

○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에서 논의중인 주제에 대하여 분야별 예술인들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2차례 시행하였음.

회차	일시	안건
1차	9.20.(금) 13:30	○ 예술인 복지 관련 예술인 FGI 진행 - 개인기반 작가, 단체활동 예술가 그룹 인터뷰 진행
2차	11.15.(금) 14:00	○ 유휴공간의 창작공간 활용관련 예술인 FGI 진행 - 개인기반 작가, 단체활동 예술가 그룹 인터뷰 진행

1) 예술인 복지 관련 예술인 FGI

(1) 추진개요

○ 회 의 명 :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 예술인복지 관련 예술인 FGI

○ 일　　시 : 2019년 9월 20일(금) 13:30 ~ 18:00

○ 장　　소 : 카페 Talk (중구 신포로46번길 5, 207호)

○ FGI 실시 위원 : 공주형 위원(예술창작분과 위원장), 채은영 위원

○ FGI 참여자

- FGI 대상 예술인은 사전 예술창작분과 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구성
- 그룹은 개인 기반 활동 작가(A), 단체 활동 예술가(B)로 구분하여 진행

구분	성명	활동분야	거주지	연령	인천과의 인연
A 그룹 (13:30 ~ 15:30)	김 순 임	시각(설치)	인천	40대	결혼
	길 다 래	시각(설치)	인천	30대	출생
	이 호 진	시각(사진)	인천	40대	출생
	이 설 야	문학(시)	인천	40대	출생
B 그룹 (16:00 ~ 18:00)	김 인 진	음악(클래식)	인천	40대	출생
	유 무 선	연극	인천	20대	-
	송 정 화	무용	인천	50대	출생

(2) 추진결과

《 A그룹(시각, 문학 예술가) 》

○ **인천에서 일상생활 및 예술가로 활동하는데 어려움**

- 전업 작가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과 예술가로서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것은 인천뿐만 아님).
- 고정적 수입이 없으므로 창작활동에 있어 공간(창고 등)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예술인 정착을 위해 공간이 필요함.
- 기존 예술지원이 상금 체계에서 사업지원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다보니 생활에 어려움도 발생.
-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자기 방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상황. 본인을 일반에게 외화 시킬 때의 어려움.

○ **예술인 복지에 대한 견해, 예술인 복지 지원경험 여부와 장단점**

- 예술인 파견사업 경험 있음(이호진 작가). 복지재단 내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해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인천형 예술인 복지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프로젝트)은 들어봤으나, 참여자들은 대다수 사업이 단발성 사업이라 미흡함을 표현하였음.

○ **인천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중요한 지점 혹은 사업**

- 예술인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예술 활동의 결과물이 공공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기반을 지원해야 할 것임(예술인 복지 지원 방향).

- 예술인 기초소득도 좋겠지만, 모든 예술인들이 만날 수 있는 모임 등을 통해 파편화 된 예술가를 동등한 입장에서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임(교류).
-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술인들이 정서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음. 복지는 금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서적 치유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임(상담). 예술인임에 갖는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것도 복지의 역할일 수 있음(예술교육, 필라테스 등).
- 인천 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실제 맞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 사회보험에 취약한 예술인에게 의료지원, 법률 및 재무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함.

《 B그룹(공연예술가) 》

○ **인천에서 일상생활 및 예술가로 활동하는데 어려움**

- 최저시급 보다 못한 공연예술가의 낮은 페이(활동비)가 가장 큰 어려움 임. 전업 예술가로 활동할 수 없고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경제적 어려움).
- 예술단체 활동을 함에도 사회보험에 가입될 수 없는 조건이므로 일반 노동자 보다 사회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함(대출, 의료보험 등).
- 인천 시민은 인천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어 대부분 예술여가를 위해 서울로 가는 현실임. 또한 순수 예술 보다는 실용 예술에 대한 확장(대학 등)으로 상대적 입지가 좁아지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있음.
- 대공연장(인천예술회관, 부평아트센터 등)은 편리한 교통, 인력 지원이 원활하지만, 중소 공연장(학산소극장, 수봉문화회관 등)은 기본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임.

○ **예술인 복지에 대한 견해, 예술인 복지 지원경험 여부와 장단점**

- 예술인 복지에 대해 큰 기대가 없음(정책 및 사업이 와 닿지 않음). 실질적 도움이 될지 혹은 논의의 진전이 가능할 지에 대해 의문임. 지역만의 논의로 진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함.

○ **인천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중요한 지점 혹은 사업**

- 예술인들이 사회 속에서 방치된 존재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복지일 것임(사회적 인프라를 사용 가능하게)
  · 공연예술가의 특성 상 신체상해가 빈번한 상황이므로 의료지원서비스를 제안.

· 문화누리카드처럼 예술인복지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혜택, 의료서비스, 법률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함.

· 예술인 복지센터가 보증을 통해 예술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제안.

- 인천 예술가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이 필요함.
- 공공공연장의 경우, 대관 사용에 있어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설 연습장을 이용하는 형편임.
- 상시적으로 장르별 예술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바람.
- A,B그룹 공통적으로 재정, 공간 등 하드웨어의 요구보다는 교류, 기회, 상담, 홍보 등 인프라(시스템)와 관련된 제안사항은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기 보다는 지역 내 자산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다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예술인 복지 관련 예술인 FGI

(1) 추진개요

○ 회 의 명 :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 유휴공간의 창작공간 활용관련 예술인 FGI

○ 일 시 : 2019년 11월 15일(금) 14:00 ~ 18:00

○ 장 소 : 카페 Talk (중구 신포로46번길 5, 207호)

○ FGI 실시 위원 : 공주형 위원(예술창작분과 위원장), 채은영 위원, 안희석 위원

○ FGI 참여자

- 예술창작분과 위원들의 추천(예술인 복지 관련) 및 예술인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한 예술인을 중심으로 FGI 대상 예술인 구성
- 그룹은 개인 기반 활동 작가(A), 단체 활동 예술가(B)로 구분하여 진행
- A그룹 : 길다래(시각), 김순임(시각), 이병국(문학), 이설야(문학)
- B그룹 : 김성민(음악), 최유리(무용), 백승철(전통), 이은선(연극)

(2) 추진결과

《 A그룹(시각, 문학 예술가) 》

○ **거주 및 작업 공간 상황**

- 문학 작가의 경우 특별한 공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음
- 시각 작가의 경우 작업 스타일에 따라 요구되는 공간은 다양한 상황

○ **지역 예술가를 위한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원 방안**
- 창작공간은 교류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함. 타 장르 예술가들이 서로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제안.
- 유휴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높아야 할 것이며 작가 간 교류를 위해서는 함께 식사하는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경험상).

○ **유휴공간을 예술가들이 운영할 경우 활용 방안**
- 인천 내 산재한 예술공간을 거점화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홍보 및 운영이 이루어지는 방식.
- 인천 중구 외에 다른 권역(인천 내)에서의 공간을 상상해야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인천에서 인천아트플랫폼 이후의 창작공간)
- 기존 예술교육 방식을 전환. 주민 개인이 가진 노하우를 통해 작가를 교육함으로 지역을 이해하게 하는 방식.
- 유휴공간을 예술가들이 직접 운영 할 경우에는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추고 조합원들을 늘리면서 공간이 운영돼야 할 것임.

○ **유휴공간을 예술적으로 활용한 사례 중 인천에 적용할 만한 사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도서관 상주예술인 프로젝트. 도서관과 작가를 연계하여 7개월 간 작업공간(도서관)과 생활비(월 2백만원)를 지원(월 지급, 4대 보험 가입), 도서관 내 유휴공간(보존서고)을 제공받음. 주 1회 도서관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작가는 자유롭게 공간 및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 미국 I-Park 의 경우, 공원에 창작공간을 두고 있고 식사는 쉐프가 제공함. 레지던시 작가의 작업실이 간격을 두고 위치하고 있어 서로 간섭하지 않음.

○ **기타 제언**
- 인천을 대표할 만한 비엔날레를 만든다면 공간, 교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임.
- 유휴공간을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징적 모델 발굴 필요(제언 형태)
- 주안 공업단지 내 유휴시설의 활용방안 제안.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 가능성. 예술창작과 원도심 재생과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임.

《 B그룹(공연예술가) 》

○ **거주 및 작업 공간 상황**

- 공연단체의 경우, 정식 연습공간을 갖춘 단체는 소수임. 대부분 지역 내 연습공간을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임. 전문예술인의 연습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생활문화동아리의 활용공간이 확장되고 있음.
- 무용의 경우에는 인천 내 연습공간의 경우 사용문턱이 높아 신진무용가의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학원 개원을 통해 공간을 사용하기도 함.

○ **지역 예술가를 위한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원 방안**

- 공연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연습공간을 제공. 공간 내 최소한의 음향장비 및 악기 대여도 가능했으면 함.
- 공연 장르별 수요가 다른 상황. 무용은 통유리와 댄스플로어가 필수적이며, 전통연희의 경우에는 넓은 공간과 방음, 음악 역시 방음. 공통적으로는 연습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공간 사용을 요구함.

○ **유휴공간을 예술적으로 활용한 사례 중 인천에 적용할 만한 사례**

- 연습공간 자체가 오픈된 공간으로 외부의 행인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일부 노출되도록 설계가 가능할 것임

○ **유휴공간을 예술가들이 운영할 경우 활용 방안**

- 공연 시연자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연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르간 협업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음.
- 해당 공간에 예술가가 상주한다는 이점이 활용할 수 있음.
- 장르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기타 제언**

- 아트마켓 상설화를 추구하는 상시 쇼케이스가 가능한 공간 제안.
- 유아 및 초등생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예술단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길 바람. 소규모 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면 함.

3.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

○ 회 의 명 :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

○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15:00 ~ 18:00

○ 장　　소 : 인천생활문화센터 H동 2층 다목적실

○ 진행내용

- 사회 및 진행 : 장한섬 플레이캠퍼스 대표(분과위원)

구 분	진 행 시 간	주 제	발제자
주제 발표	15:00~15:30	인천형 예술인복지 제언	채은영 임시공간 대표 (분과위원)
	15:30~16:00	유휴공간 예술적 활용의 필요와 의의	공주형 한신대학교 교수 (분과위원장)
휴 식 (20분)			
토론	16:20~17:30	지정토론	안희석 루체뮤직소사이어티 대표(분과위원) 이병국 시인
		자유토론	

1) 〈발제 1〉 인천형 예술인복지 제언 [14)]

채은영 (임시공간 대표 / 독립 큐레이터)

○ 2019 예술창작분과에서 두 가지 주제로 논의 진행.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은 지역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함.

○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들이 지역 예술인 안에서 공론화나 공유가 되기 전에 제도나 인천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음. 이런 부분을 지역 예술가들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인복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게 됨.

○ 예술창작분과 예술인복지 소모임은 8월에 일정 협의를 했고, 3가지 트랙으로 진행함. 한 가지는 중앙 단위에서 예술인 복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14)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에 발표한 채은영 대표의 발제문을 재정리함.

예술인 복지재단의 관계자 분을 모시고 중앙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제도와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한 번 살펴봄. 그 다음에 안산시 기초지차체 단위에서 예술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중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는 요즘엔 그 인천연구원에서 인천 예술인 복지 플랜이라는 연구결과를 살펴봄.

○ 「2018 인천예술인복지플랜 연구」에서는 지역 예술인 1,00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그 연구결과 보완을 위해서 30대, 40대, 50대 사이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중앙 단위와 기초 단위의 제도와 법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좀 해서 저희가 지역 예술인의 복지를 어떤 식으로 상상해야 할지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함.

(1) 문화비전 2030의 등장

○ 예술인 복지 정책은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서 공론의 장에서 제안되어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먼저 수립하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그 배경에는 문화체육부에서 2018년에 발표한 〈문화비전 2030〉이 있음.

○ 〈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 중 첫 번째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문화 예술인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이라는 의제가 있고, 세부과제로 〈(예술인 복지 강화)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음.

○ 세부과제의 내용은 1. 한국형 예술인 고용 보험 도입, 예술인 복지 지원센터 개소,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 2. 예술인 복지 금고 도입, 예술인 패스 제공, 예술인의 창작 · 주거 연계 확산 지원, 예술인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매개자 교육, 심리상담 · 의료비 · 자녀돌봄센터 운영 등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새예술정책이나 예술인복지 사업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림 1】 문화비전 2030 비전 및 체계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 2030〉

(2) 인천시 2030 미래이음 문화관광체육 계획

○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2019년 9월에 '2030 미래이음 문화관광체육 계획'을 발표하고, 예술인복지사업을 준비중임. '모두가 누리는 문화'라는 항목에 창작과 삶의 균형, 예술인 복지플랜 시행이라고 해서 정책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으나, 현장의 예술가들은 잘 모르는 상황임.

○ 이 정책 과제 안에 '예술인 복지 지원센터 설립', '인천 예술인 주거 창작 공간 지원',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라는 형태로 '창작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인천 예술인 복지 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 방향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음.

○ 이런 논의의 근거로는 2016년 9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있음. 이러한 조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2019년에 9월에 발표한 「2030 미래이음 문화관광체육 계획」에서 지역 예술인 복지에 관한 다양한 사업들과 제도들을 시행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2】 인천광역시(2019), 「2030 미래이음 문화관광체육 계획」(출처 : 인천광역시)

【그림 3】 인천광역시(2019),「2030 미래이음 문화관광체육 계획」(출처 : 인천광역시)

【그림 4】 인천광역시(2019),「2030 미래이음 문화관광체육 계획」(출처 : 인천광역시)

(3)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연구

○ 「2030 미래 이음 문화관광체육 계획」에서 예술인복지플랜 시행을 발표한 것은 2018년에 인천연구원에서 진행한 「인천 예술인 복지 플랜」이라는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인천 예술인 복지 플랜」 연구는 인천 지역 예술인을 약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추산의 근거는 예총 회원, 민예총 회원,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술인들, 또는 인천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수치임. 그 중에서 1,000명 정도를 조사 대상자로 해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예술인 복지 플랜」 연구결과가 나옴.

○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마친 예술인은 2,713명. 서울이나 경기나 부산 이런 데를 따져서 전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중에 인천의 예술인은 4% 정도임. 등록된 예술인의 대부분은 청년층(83.9%)임. (20대 19.8%, 30대 44.8%, 40대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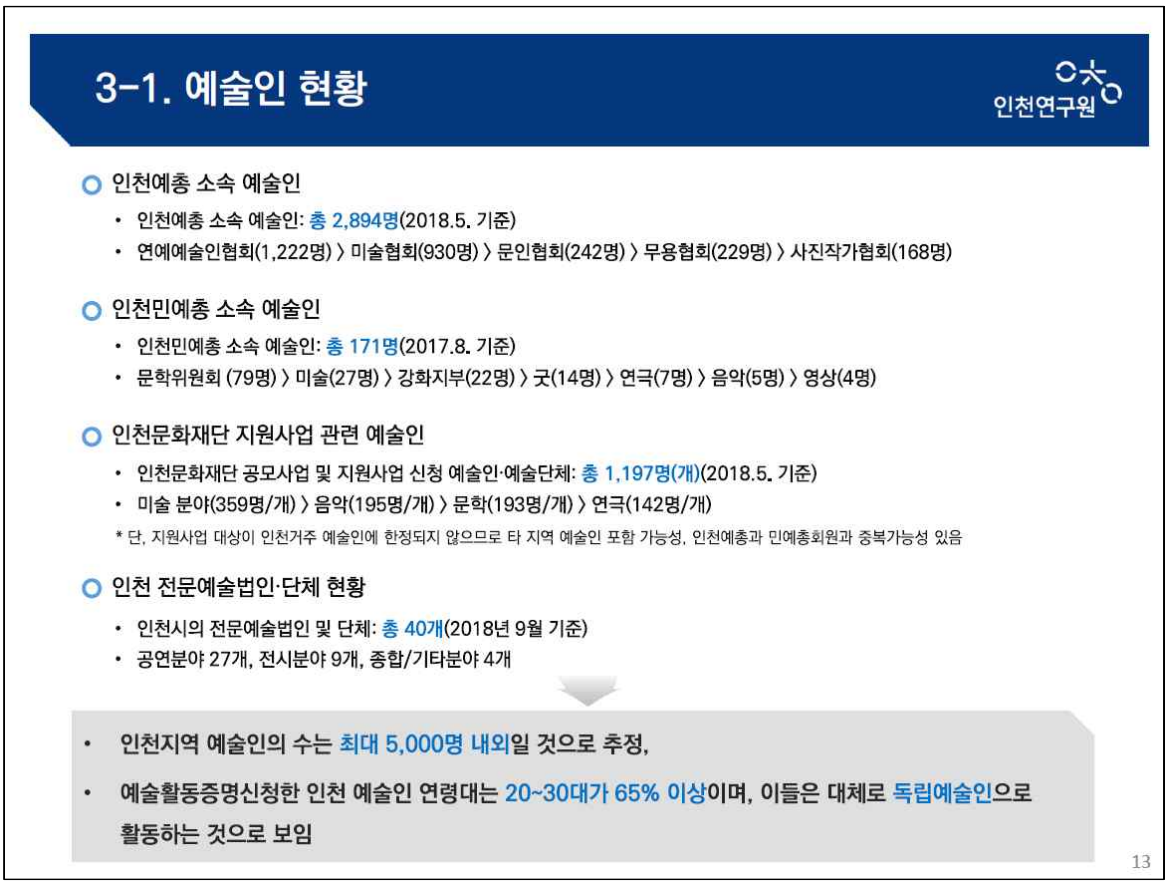

【그림 5】 2018 인천예술인실태조사 조사대상 (출처 : 인천연구원(2018), 인천예술인복지플랜)

□ **예술활동증명 누적완료자 현황 (2019.9.30.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기준)**

ㅇ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누적완료자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원수	29,090	3,980	1,557	2,713	1,256	1,338	996	173	15,554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원수	1,056	705	808	1,682	727	792	3,530	528	66,485

□ **인천 지역 예술활동증명 누적완료자 현황 (2019.9.30.기준)**

ㅇ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누적완료자 현황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인원	227	402	35	0	627	72	76	482	310	190	122	170	2,713
비율	8.4%	14.8%	1.3%	0.0%	23.1%	2.7%	2.8%	17.8%	11.4%	7.0%	4.5%	6.3%	100%

ㅇ 성별 예술활동증명 누적완료자 현황

구분	남	여	합계
인원수	1,435	1,278	2,713
비율	52.9%	47.1%	100%

ㅇ 연령별 예술활동증명 누적완료자 현황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인원수	538	1,216	523	245	120	53	18	2,713
비율	19.8%	44.8%	19.3%	9.0%	4.4%	2.0%	0.7%	100%

【표 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인천 지역 예술인 현황 (2019.9.30. 기준)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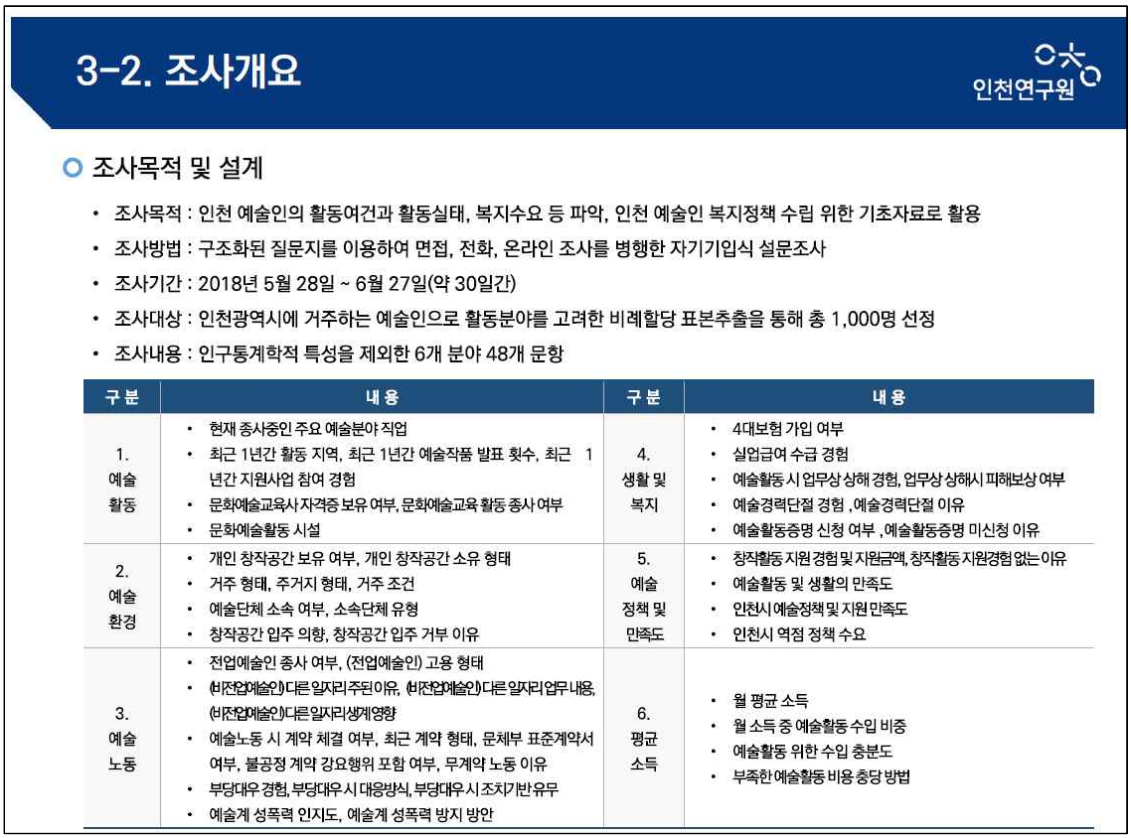

【그림 6】 2018 인천예술인실태조사 조사개요 (출처 : 인천연구원(2018), 인천예술인복지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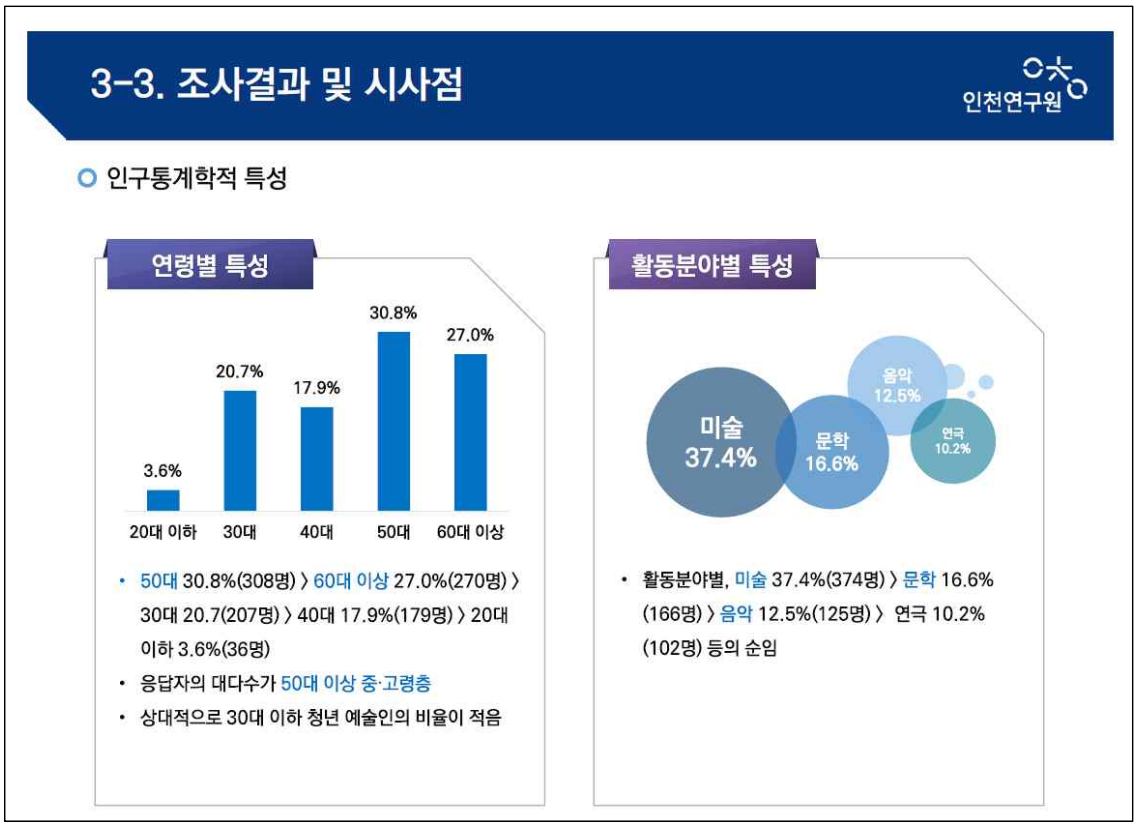

【그림 7】 2018 인천예술인실태조사 조사결과 (출처 : 인천연구원(2018), 인천예술인복지플랜)

○ 「2018 인천 예술인 복지 플랜」은 1,000명을 대상으로 6개 분야 48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연령별로는 60대 27.0%, 50대 30.8%, 40대 17.9%, 30대 20%, 20대 3.6%이며, 활동분야별로는 미술 37.4%, 문학 16.6%, 음악 12.5%, 연극 10.2% 등의 순으로 이루어짐.

○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의 숫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으로 신청되어 있는 예술인의 숫자와는 크게 차이가 있음. 지역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조사의 조사대상 설계와 중앙 단위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증명을 신청한 인천 예술인 사이의 통계와 지표에 큰 차이가 있음.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완료자	19.8%	44.8%	19.3%	9.0%	7.1%	100%
인천예술인 실태조사 조사대상	3.6%	20.7%	17.9%	30.8%	27.0%	100%

【표 1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와 인천예술인실태조사 조사대상 비율 비교

○ 「인천 예술인 복지 플랜」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단위 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2030 미래이음 문화관광체육 계획」이 발표되고 인천시 문화예술과의 정책방향이 설정됨. '예술인복지' 관련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예술인복지' 정책수립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인천 예술인 복지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실제 예술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은 잘 모르고 있거나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더욱 이런 부분을 공론화하고 알려나갈 필요가 있음.

○ 중앙 단위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서 창작 준비 지원금이라든가 예술인 파견이라든가 학습 공동체,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술인 패스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4) 경기도 안산시 예술인 기본소득 논의

○ 지자체 단위에서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추진을 준비하고 있음. 예총과 민예총 소속에 상관없이 안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몇 백 명이 다같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음.

○ 경기도 안산시 예술소득 추진계획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 논의에 근거를 두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수입은 평균 '1,281만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 예술인들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예술창작의 지속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에 그 이유를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 시간이 감축되고 일자리가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의 부 창출이 되고 있으니까 데이터 업계에서 창출된 이익을 국민들에게 고루 분배해야 한다는 논의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생기고 있음. 경기도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기본소득의 주용 내용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500명에게 월 50만 원의 기본 소득을 1년 동안 제공하는데, 그 대상은 예술인 활동 증명이 된 사람으로 하고, 안산의 지역 화폐로 제공한다는 내용임.

(5) 예술인 대상 FGI

○ 9월 20일에 개인 예술가, 단체 예술가 두 그룹을 대상으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함. 개인 예술가는 시간이나 문학, 단체 예술가는 음악, 연극, 무용 분야를 대상으로 함. 지역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임.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고정 수입이 없고 창작 공간 활동 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얘기함. 시각예술과 문학 쪽에서는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나 혹은 예술인 파견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가 있는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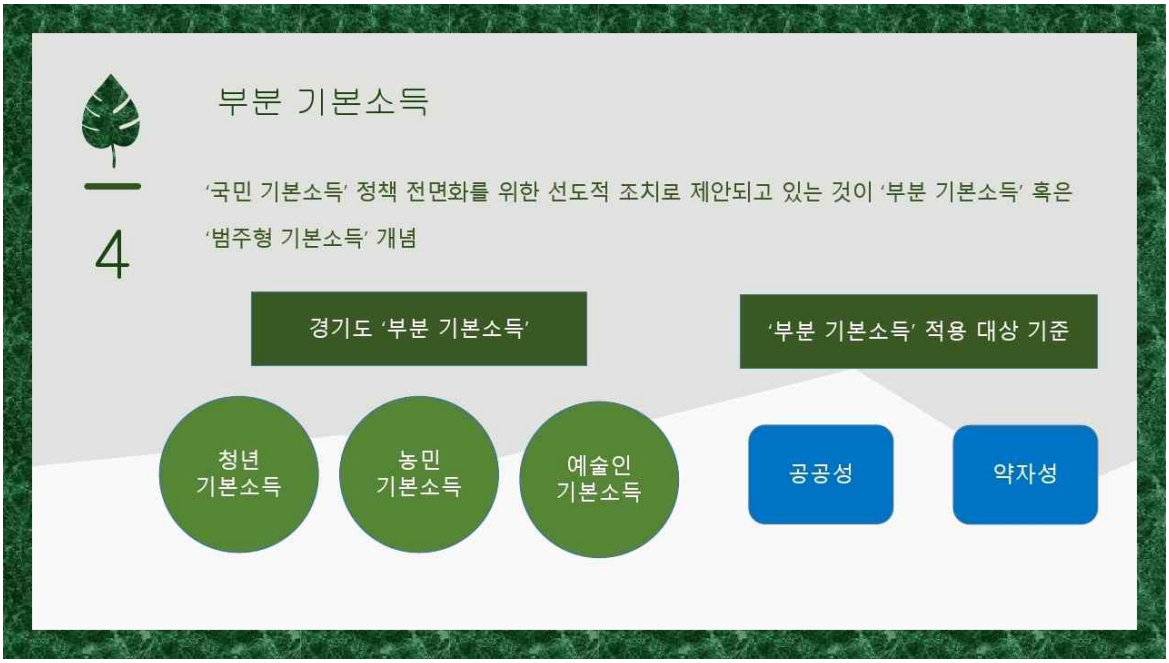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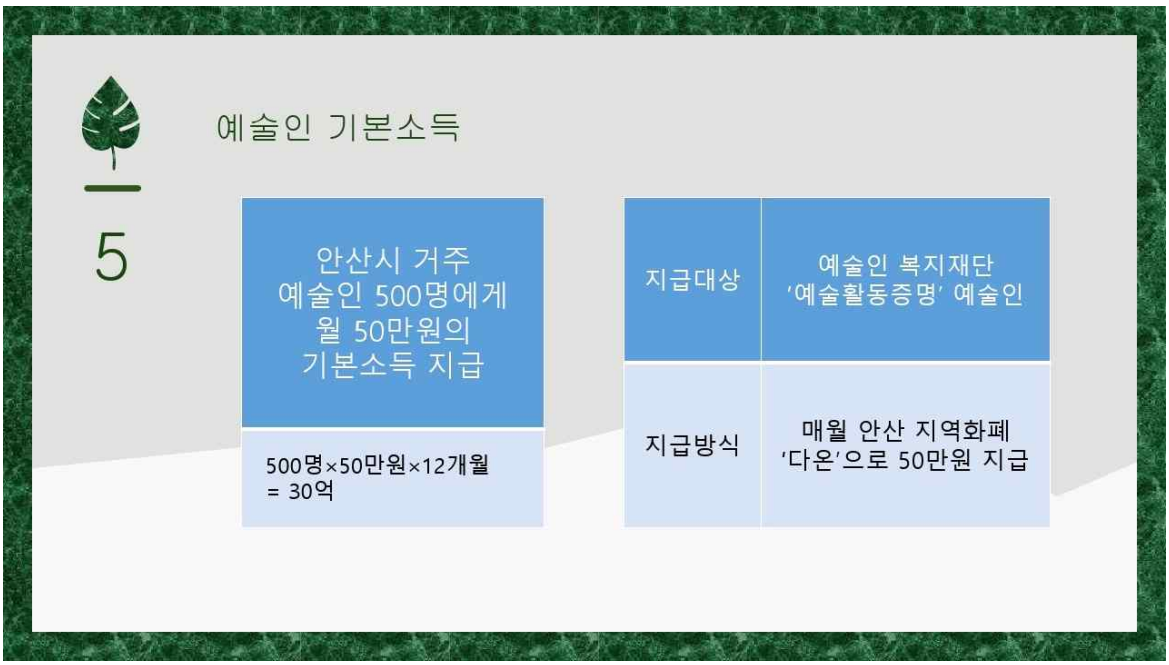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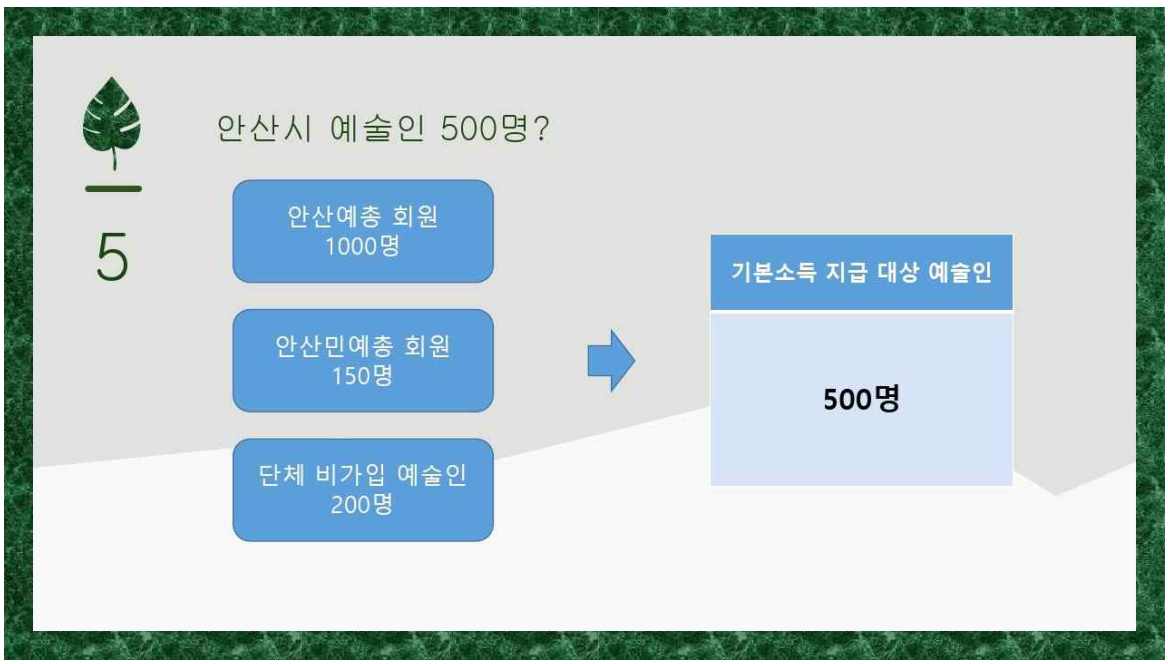

【그림 8】경기도 안산시 예술인 기본소득 추진안 (출처: 경기 안산민예총 김태현 지부장 발표자료)

○ 예술인 FGI에서 지역 예술인 복지 사업으로 직접 지원보다 예술가들끼리 교류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공통적으로 병원이나 전문 상점, 법률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역 화폐나 지역 네트워크 안에서 예술인 패스를 가지고 있는 예술가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옴.

○ 특징적인 것은 예술인 복지 사업에 있어서 창작 준비금 등의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예술가의 작업이나 작품 혹은 예술가의 재능이 지역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옴. 예술가가 복지의 대상으로서 수혜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예술가 본인의 작업이나 재능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옴.

○ 단체 예술가의 경우에는 예술인들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월급을 받거나 출연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음. 개인 예술가로서의 복지 보다는 단체 소속으로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거나 4대 보험과 같은 보장이 보다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옴. 무용이나 연극과 같이 신체를 많이 움직여야 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물리 치료나 이러한 의료지원을 받고 싶다는 얘기가 나옴. 그 다음에 법률 지원 서비스, 세무지원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옴. 우리 동네 세무사, 우리 동네 변호사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술인 패스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이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옴.

(6) 예술인 활동증명의 필요성

○ 「인천 예술인 복지 플랜」에서 설문조사 대상이 주로 50대, 60대, 70대에 집중되어 있어서 FGI는 주로 20대부터 30대, 40대에 맞춰서 진행함.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지역 예술인의 전체를 이야기 하고 대표성을 갖는다거나 표본으로써의 유의미한 신뢰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안된 내용들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음.

○ 지역 예술인 복지 사업을 고민할 때 대상이 되는 예술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활동 증명을 기준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예술인활동증명 절차를 아직까지 모르는 예술인들이 많고 신청서류 준비 등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홍보와 등록 업무 지원이 필요함. 지역에서는 특히 아직까지도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가 활동증명 신청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거나 신청절차를 어려워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장르나 세대별로 굉장히 많은 상황임.

○ 예술인복지 정책 수혜 대상으로서 1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가 활동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 예술가가 이 부분에 관계를 맺거나 연착륙 할 수 있게 할지가 관건임. 예술인들이 예술인 활동증명을 직접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원로 분들은 재단이나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등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함.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최근 3~5년의 실적을 서류로 증빙을 해야 함. 하지만 개인적인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경력 단절이 된 작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어서 활동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못한 원로 작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예술인 활동증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그리고 지역의 경우에는 도록이나 활동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이 활동하던 공간이 없어지거나 활동하던 단체들이 없어지면 그러한 자료들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런 지역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어떠한 작가가 예술인 활동증명을 할 수 없다면 이런 부분을 지역 예술인 복지 지원센터라든가 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왔음.

○ 그 다음에 예술 장르, 세대, 활동 조건에 따른 예술인 복지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도 많이 필요함. 제도와 절차에 대한 홍보도 필요함. 지역 예술인 대상의 홍보 및 여론화를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함. 인천시에서 나오는 정책 과제로써 그냥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 예술가들에게 필요한지, 시민들이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을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우리가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복지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함.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 운동이 활성화 된 지가 4~5년 되었는데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물 복지나 동물 보호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하면 일반인들의 공감을 얻

기가 매우 어려웠음. 그런데 불과 한 3~4년 사이에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에 대해 일반 대중들이 공감하게 됨. 과연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도 그러한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음.

○ 예술가들이 예술인 복지에 대한 강의나 토론을 하지만 시민들이 예술인복지에 대해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상상도 필요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시민들에게 예술의 의미나 예술인 복지를 알리는 사업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술인 복지 사업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해 들음. 예술인복지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임.

(7) 예술인복지 사업 대상 기준의 설정

○ 예술인 복지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임.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논의과정에서는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활동증명을 기본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 그리고 인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활동실적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함. 인천 3년 이상 거주 조건은 사업예산이 인천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3년 이상 활동실적 부분은 단체라든가 혹은 작업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공간의 부동산 계약서라든지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부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예술인복지법과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한 예술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1)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 2) “예술인”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 저작권법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 위 두 가지에 준하는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

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임.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함. (예술활동 증명 운영 지침 제2조)

○ 활동실적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 물적 증거자료(도록, 홍보물, 서적 등)가 남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예술인복지를 시행하는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폭넓은 토론을 통해 예술인들의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임.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 예술인의 정의
제2조(정의)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 예술인의 정의 & 예술활동증명의 시행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 5. 삭제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예술활동 증명 운영 지침 – 예술활동증명의 의의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활동임이 분명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표 12】「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인의 정의, 예술활동증명의 시행내용

(8) 예술인복지 사업의 범위

○ 다음으로 예술인복지 사업의 범위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함. 하나는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할 것인가, 예술인 생활 지원을 할 것인가? 인천연구원의 「예술인 복지 플랜」 연구보고서의 나온 예술인복지사업 제안의 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사업과 많이 중첩되어 있음. 예술인복지 사업 지원을 새로이 하게 된다면 예술인 생활 지원이나 기반 지원은 예술인 복지 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것임.

○ 개인 예술가와 단체 예술가를 지원할 때, 방점은 개인 예술가 지원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창작 지원금 이외에도 간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의료, 법률, 혹은 컨설팅, 공유 공간, 교류 공간 등 기존에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잘 엮어서 예술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는 각종 인적 물적 서비스)

○ 예술가 입장에서는 예술가의 재능과 작업이 지역 사회에서 순환될 수 있는 유통이나 시장, 일자리 등의 부분이 훨씬 더 필요한 부분임. 예술가를 단순히 지원의 개념이나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지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시민들이 예술가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업, 단체, 공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곳곳에 파견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에서 또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있음.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문화예술 사업이 많이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활동에 예술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9) 인천형 예술인복지사업의 개념 제안

○ 예술인 지원사업을 맵핑해 보면, 한 축은 개인(예술가)과 단체를 수평 축으로 하고, 한 축은 생활과 활동을 수직 축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먼저 공간을 놓고 생각하면, 개인의 생활에 해당하는 주거공간과 활동에 해당하는 작업공간을 각각 아래 위로 놓을 수 있음. 그 다음에 개인과 단체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유공간, 거점공간, 플랫폼 등의 공간이 있음.

○ 그리고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득, 그리고 보다 활동에 필요한 창작 준비금을 각각 설정할 수 있음. 경기도 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 소득 논의,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 준비금 등은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의료나 심리 상담 등 개인의 삶의 질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간접 지원 서비스들이 있을 것임. 활동 측면에서는 예술인 파견이나 메세나, 유통이나 시장, 이런 측면의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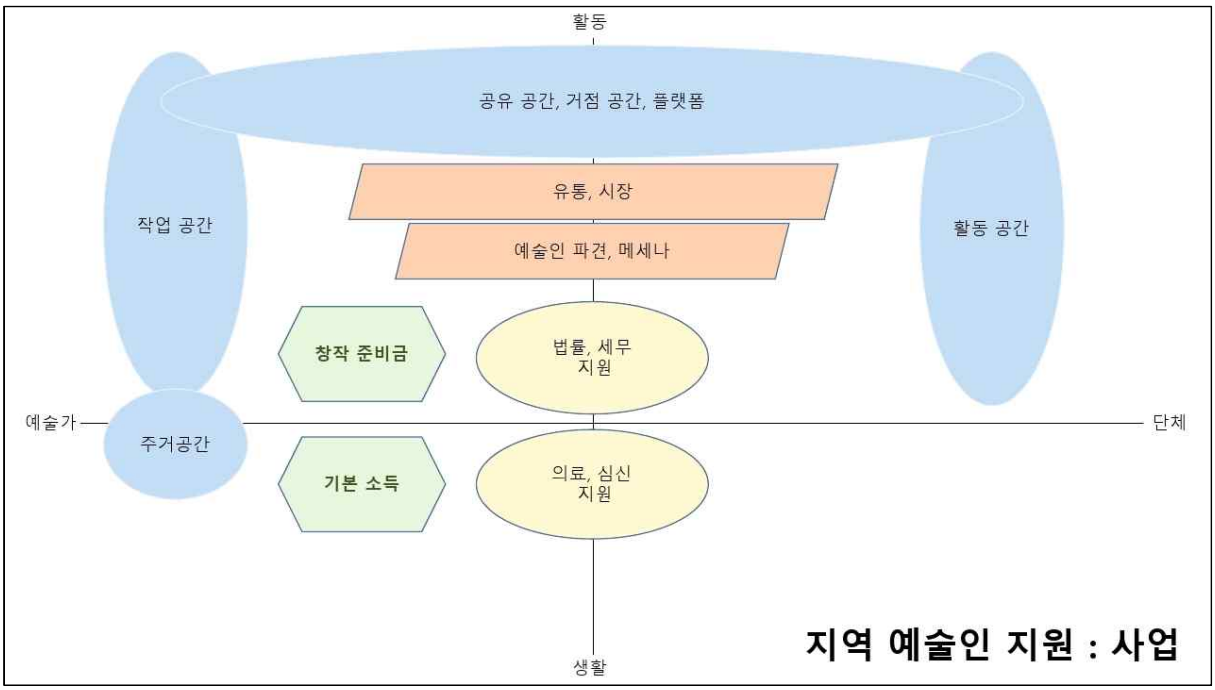

【그림 9】 인천형 예술인복지 지원에 대한 개념도 (Mapping)
(출처 :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 채은영 발제 자료)

(10) 인천형 예술인복지사업의 시행 조직에 대한 제안

○ 인천형 예술인복지사업을 어디에서 실행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 부산문화재단는 산하에 예술인복지지원센가 있음.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논의에서는 인천문화재단 산하 부서로 가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견이 나옴. 왜냐하면 창작 지원과 생활 지원에 대한 것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부분, 재단의 연구 조사 기능이 강화 되었을 때 이러한 예술인의 실태 조사 등과 연계 되는 부분, 또는 지역 예술가가 활동한 경력 증명을 지원을 할 때에는 필요한 조직 역량 등을 감안했을 때 인천문화재단 내부의 부서들과 정보 공유가 되고 소통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단 인천문화재단 산하 부서로 가고 이후 독립을 고민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나옴.

○ 예술인 복지 사업예산은 기존의 문화예술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논의를 진행함. 「인천 예술인 복지 플랜」 시행을 위해 인천의 문화 재원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이냐 하는 논의를 했으나, 예술인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을 고려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직접 지원(현금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각종 서비스 제공)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음.

○ 인천 지역의 예술인 복지를 위한 상상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야기 했을 때 인천 지역 예술인의 실태 조사를 조금 제대로 해보자는 의견이 나옴. 그냥 용역 형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해서 FGI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지역의 예술인의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실태 조사를 해서 정책의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와 통계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음. 2020년에 그러한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결과를 통해서 다시 예술인복지를 위한 지원 구조나 로드맵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인천시에서 예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을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 예술인복지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 예술계 안에서의 공론의 장이나 시민 의식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는 직접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생태계를 잘 활용하는 간접 지원 형태를 먼저 많이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 다음에 지역의 기업이나 단체 등을 활용해서 예술시장이나 유통을 활성화 시켜서 단순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복지지원센터의 지원 사업, 혹은 지원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는 다른 영역으로 좀 넓힐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교류 공간으로서 공유 공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역 안에서 예술계와 시민들 안에서 지역 예술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충족이 되면 직접 지원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의 공간을 한 번 짜보자는 의견임. 지역 예술인의 건강한 생존과 실존, 혹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다양성과 역량을 좀 찾아보는 것을 지향하자고 제안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금 상황은 지역 예술계 안에서 예술인복지사업이 필요하다는 공론의 장이 형성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님.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이 지

역 예술가들이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그 필요성을 제기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먼저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임. 실제 보다는 문화정책 당국의 요구에 의해서, 일종의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의 세대나 활동 척도나 여러 가지에 대한 이해도와 의견이나 경험치가 다른 상태에서 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기존에 있는 재단, 다른 데서 했던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이 사례로써 언급되고 있음.

○ 인천의 현장에 맞는 예술인 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들을 통해 예술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예술인 복지사업의 내용이 고민되어야 함.

○ '예술인복지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은 인천의 예술인으로부터 먼저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음. 행정의 차원에서 예술인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상황이므로, 행정 단위에서의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의 속도들을 조금 조율하고 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예술인복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들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지역 예술인 복지의 필요와 조건

: 지역 예술인 복지 왜? 그래서 ?

2019. 11

채은영(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예술 창작 분과 / 예술인 + 복지 소모임

8월 12일 진행 일정 협의

8월 19일 중앙 예술인 복지 정책 현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8월 26일 지자체 예술인 복지 정책 현황 : 안산 예술인 기본소득

9월 2일 중간 점검

9월 20일 지역 예술인 FGI 2회

9월 30일 지역+예술인+복지를 위한 기본 방향

배경 : 문화비전 2030 (문화체육부, 2018)

- 개인의 자율성 보장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예술 체육인 복지 지원

예술인 복지 강화

: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교육 서비스, 예술인 복지 금고

예술인패스, 창작 주거공간 지원, 매개자 교육, 심리 의료, 자녀 돌봄 등

- 예술인 복지법, 새 예술정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배경 : 2030 미래이음 (문화체육과, 2019)

- 모두가 누리는 문화

창작과 삶의 균형, 예술인 복지 플랜 시행 (53억 1,500만원 확보 계획)

: 인천예술인 복지 지원센터 설립

예술인활동증명, 표준계약서 안내,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 발굴

: 인천 예술인 주거, 창작 공간 지원

빈집, 유휴공간 활용한 예술창작공간, 예술인 임대주택, 공유형 창작공간

: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생활문화, 공공예술, 거리문화 참여, 예술인-기업 매칭, 청년 예술인 지원

-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인천예술인 복지 플랜 (인천연구원, 2018)

- 예술인 현황 : 약 5000여명으로 추산

  예총 (2894명, 2018.5) 민예총 (171명, 2017.8)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1,197명, 2018.5) 단체법인(40, 2018.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예술인 2,225명 (전체 4.03%. 2018.9. 30대, 20대, 40대)

  : 지역 및 중앙 지표, 통계의 편차

- 조사 개요

  1000명, 48개 문항

  50대 30.8%(308), 60대 28.0%(270), 30대, 20.7%, 40대 17.9 %, 20대 3.6%

  미술 37.4%, 문학 16.6%, 음악 12.5%, 연극 10.2%

인천예술인 복지 플랜 (인천연구원, 2018)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 예술인 정의, 활동 증명,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생산 과정의 불확실성, 프로젝트성 비정규직 고용

사회복지, 기본권에 대한 소외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예술인 노동의 특수성 (유네스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권고, 1980)

- 예술 정책과 예술인 정책

: 예술 정책 창작/ 향유 지원

예술인 정책 수혜 지원보단 지위와 권리를 향상, 사회적 인식 변화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

- 새예술정책 (2018 – 2022)

: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 /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예술인 복지 정책지역 협력체계 구축 (가칭) 예술인복지 지역협력 위원회

: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원로예술인지원(창작준비지원금), 중견/신진 (예술인 파견)

: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학습공동체, 파견지원 사업 재구조화, 고용보험, 사회/산재보험, 생활자금, 예술인패스

심리상담, 자녀돌봄, 의료지원

: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 / 공정하고 활력있는 예술 시장 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서면계약 실효성, 공정상생지원센터

지자체 예술인 기본 소득 : 경기도 안산시

- 필요성

: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예술의 공공재적 가치, 예술인의 열악한 소득 실태

: 국민 기본소득 시대 선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시간 단축, 일자리 감소

기술혁신 데이터 기반 부 창출, 일자리 복지에서 기본 소득 생계 보장

- 부분 기본 소득

: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 공공성, 약자성

: 안산시 거주 예술인 500명에서 월 50만원 기본 소득 제공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대상, 안산 지역 화폐 지급

지역 예술인 FGI : 개인 예술가 (시각, 문학)

- 2019년 9월 20일, 30-40대
-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예술창작지원의 프로젝트성, 고정 수입 부족, 창작 활동 공간 유지 어려움

예술활동에 대한 주변 및 사회적 인정과 이해 부족

- 예술인 복지에 대한 경험 및 이해도

한국예술인복지사업 경험(창작준비금, 예술인파견지원)

단발성에 대한 아쉬움 및 지역 기업 및 단체 부족

- 지역 예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제언

교류를 위한 플랫폼, 직접 지원(기초소득 등)보단 지역 병원, 전문가, 상점 등을 연계한

의료, 심리, 법률, 세무 등 연계 (예술인 패스와 지역 화폐 연계)

지역 예술인 실태 조사 등 지표와 통계의 재조사

복지지원보단 예술가의 작업과 활동이 지역 사회에 적절하게 유통되어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방안 필요

지역 예술인 FGI : 단체 예술가 (음악, 연극, 무용)

- 2019년 9월 20일, 20대, 40대, 50대
-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단체 소속 예술가의 경우, 소속 단체에서 받는 낮은 월급, 사회보험 문제의 어려움

  지역 내 공연장이 다양하지 않고 교통 등 기본 인프라가 열악
- 예술인 복지에 대한 경험 및 이해도

  개인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경험 및 기대도가 낮은 편
- 지역 예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제언

  공연예술가의 특성상, 의료지원 필요

  문화누리카드같은 문화혜택, 의료, 법률 자문 등 필요

  지역 예술인 교류 및 재교육 프로그램

지역 예술인 복지 : 대상

-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 예술인 활동 증명

  : 활동 증명 절차에 관한 홍보 및 등록 업무 지원
- 예술인 활동 증명 + 지역 상황

  : 원로 예술인, 최근 경력 및 이전 경력 확인
- 예술 장르, 세대, 활동 조건에 따른 예술인 복지에 대한 경험, 이해 상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험 유무, 개인 및 단체 중심 활동
- 지역 예술인 대상의 홍보, 여론 및 공론의 장 필요

  : 지역 예술인 복지에 대한 필요성, 당위에 대한 공론의 장, 실태조사의 신뢰도

지역 예술인 복지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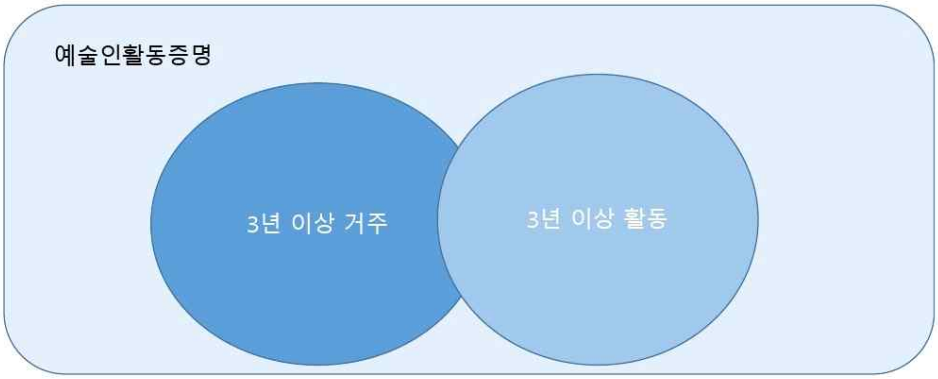

- 주민등록상 거주
- 작업실 및 단체 공간 부동산계약서
- 소득수준 확인
- 지역 활동 및 경력 확인

지역 예술인 복지 : 범위

- 예술 창작 지원 / 예술인 생활 지원

: 창작 지원보다 예술인 생활 및 기반 지원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 (프로젝트 베이스, 일회성)

- 개인 예술가 / 단체 지원

: 단체 보단 개인 예술가

- 간접 지원

: 의료, 법률 지원 및 컨설팅, 공유 및 교류 공간

- 예술가의 재능과 작업이 지역 사회에 선순환 될 수 있는 유통, 시장, 일자리

: 예술가가 지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함께 하고, 시민들이 예술/가의 의미 공유

지역 기업, 단체, 공간과의 협업 모색, 주민참여예산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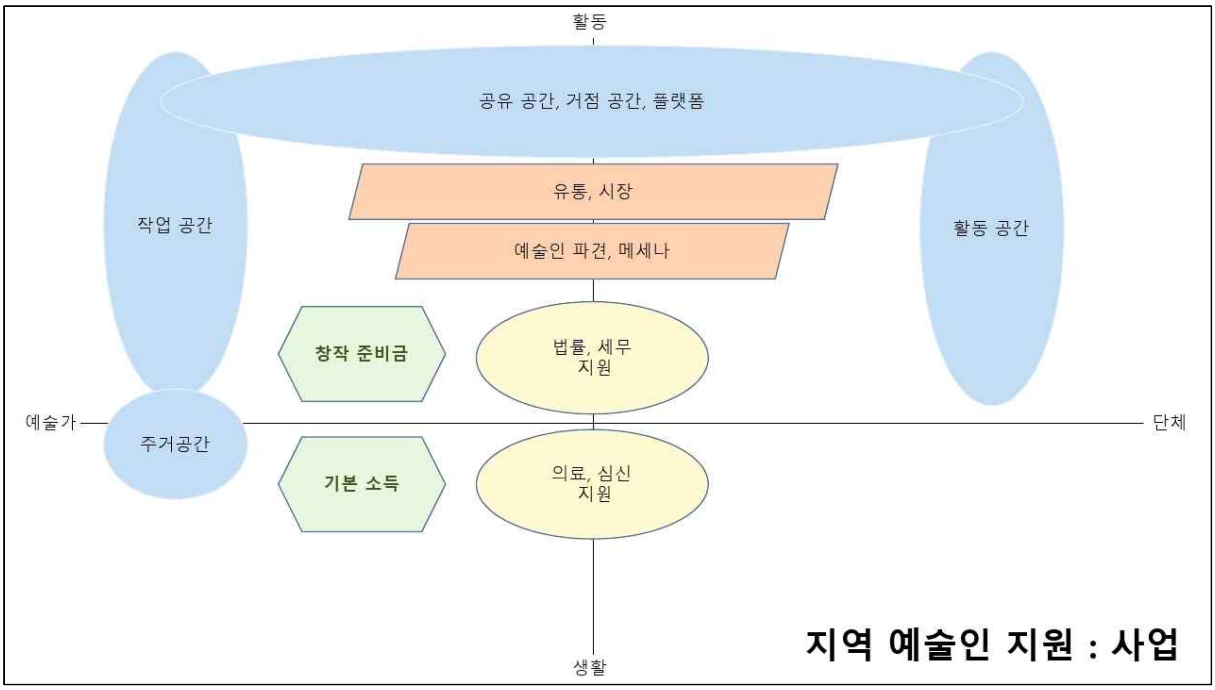

지역 예술인 복지 : 조직

- 인천예술인복지지원센터

  : 별도 센터 설립,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인천문화재단 산하 부서

  : 창작지원과 생활지원의 유기적 연계

  재단 연구조사 기능과의 연계

  지역 예술 활동 및 경력 증명 지원 연계

지역 예술인 복지 : 예산

- 기존 문화예술 예산이 아닌, 별도 예산 확보 관건
- 인천예술인복지플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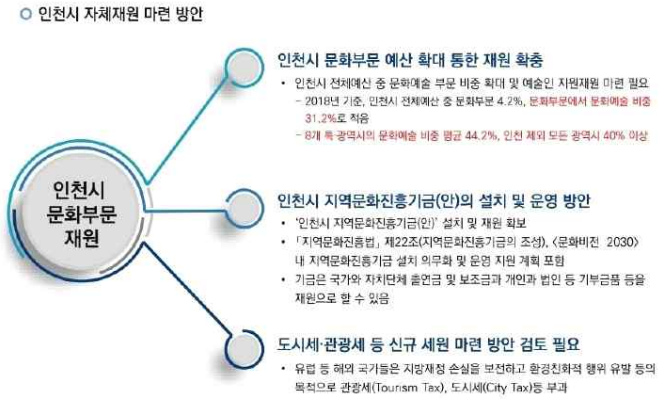

지역 예술인 복지를 위한 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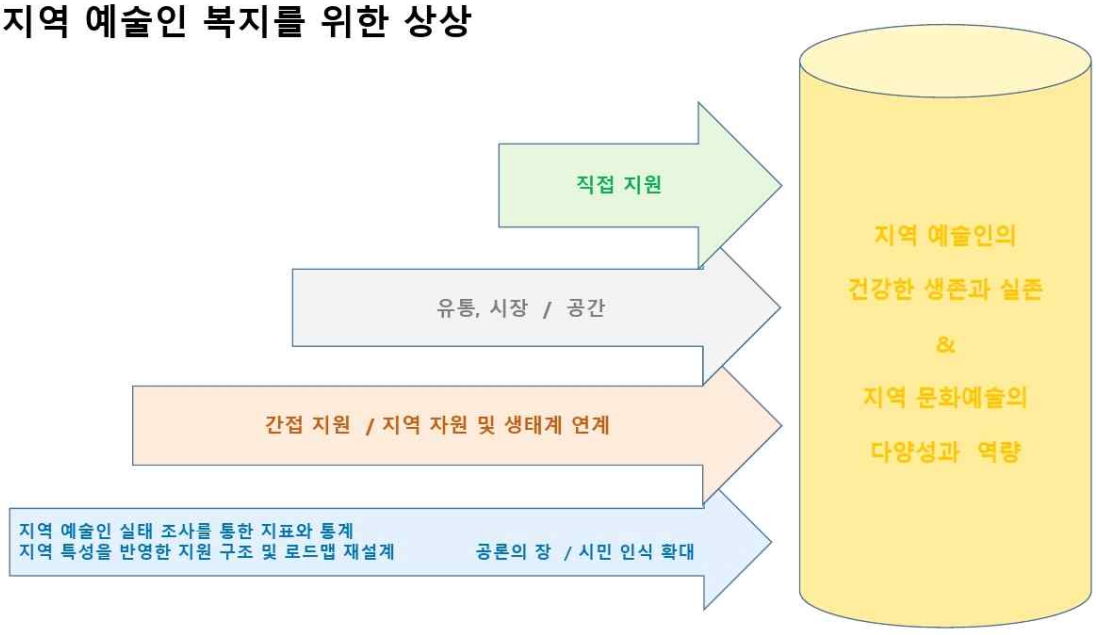

지역 예술인 복지 : 왜 ?

- 지역 예술인 복지에 관한 공론의 장 부족

  문화정책의 요구에 의한 탑다운 방식의 제도, 플랜

  2030 미래이음, 예술인 복지 플랜 시행 계획 – 관주도, 성과주의

  세대, 활동 조건, 장르별 예술인 복지에 관한 다른 이해도와 의견

- 인천형 예술인 복지 사업?

  지역 예술인의 상황과 요구 분석 부족, 현장 및 지역 생태계와 다른 지원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다른 지자체 사례의 단순 반복

지역 예술인 복지 : 그래서 ?

2) 〈발제 2〉 유휴공간 예술적 활용의 필요와 의의 : 발제요약문 [15)]

공주형 (한신대학교 평화교양학부 교수)

○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에서 7월부터 3개월 정도 11명의 분과위원님들과 인천문화재단의 정책연구팀과 같이 예술인 복지와 인천에 있는 유휴시설의 예술적 활용 방안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함.

○ 발제할 내용은 세 파트임. 유휴시설을 예술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추진배경에 대한 부분, 예술창작분과에서 논의했던 과정과 내용들과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유휴공간을 예술적활용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과제들 순서로 발표를 진행함.

(1)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 추진 배경

○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분과에서 유휴 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논의하게 된 배경은, 예술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안에서 예술창작환경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무언을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로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46.5%,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 27.1%,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 10.7%,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2.4%, 기타 13.3%를 들고 있음.

구분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기타
비율	46.5%	27.1%	10.7%	2.4%	13.3%

【표 13】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예술인실태조사)

○ 인천시에서 예술인복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인천연구원에서 「인천예술인복지플랜」 연구를 하면서 인천예술인실태조사를 시행한 부분이 있음. 이 연구에서 주

15)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에 발표한 공주형 교수의 발제문을 재정리함.

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예술인들이 거주하면서 창작도 지속할 수 있는 인천이 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과 예술인 창작을 진흥하겠다는 부분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인 공간도 좀 조성해야 되겠고 예술인 교류도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 예술인들의 역량도 조금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예술인들이 인천에서 거주하면서 창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 하다가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없으므로 공간과 관련한 논의를 먼저 해 보면 좋겠다고 논의가 됨.

○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대부분 1년 단위이고 프로젝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예술인들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인천 예술인들한테 절실하다고 느껴지는 공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주제로 잡게 됨.

○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얘기하면서 '창작공간 조성'이 아니라 '예술적 공간 활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기존의 창작 공간들은 개인에게 폐쇄된 공간 안에서 완결된 미학적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공간이라면,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에서는 기존의 창작공간과 조금 다른 유연성, 공간의 유연성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인천시나 인천문화재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조건을 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무언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창작공간이 아니라 예술적 공간활용이라는 명칭을 붙여봄.

(2)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 사례 조사

○ 인천에서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인천 문화예술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과 특수성이 있을 것임. 유휴공간을 예술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상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해외 사례보다는 인천 내에서의 공간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함. 인천에 필요한 것을 해외 유명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음. 유명 해외 사례를 보려면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열 명이 모여서 사례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우선 인천에서 어떠한 공간들이 예술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

요할 거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래서 인천에 있는 공간 두 군데를 탐방을 진행함.

○ 첫 번째 시설로 계양구의 체육시설 안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카페 아비앙또(운영자 : 몬스터레코드)를 방문함.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몬스터레코드 관계자를 만나서 설명도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음. 자생적으로 공간을 운영하려다 보니 수입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음. 이 공간을 보고 나서 나눈 이야기는 자생적 공간 운영을 위해서 수익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어떤 성격의 수익활동이어야 할까 하는 부분이었음.

○ 몬스터레코드는 공간을 운영하면서 음악 페스티벌도 열고 버스킹도 개최하고 있음. 버스킹이나 음악 페스티벌이 없는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카페 공간으로 보일 수 있어서 예술적으로 조금 더 상상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분과 내에서 의논을 함.

○ 두 번째로는 미추홀구에 위치한 빈집은행을 방문함. 빈집은행은 구 주민센터였던 곳을 처음에는 노인정으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청년들이 인테리어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따고 창업 준비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 빈집은행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긴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예술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아니었음. 도시재생,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이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에서 고민하던 방향과는 지향점이 다른 공간이었음.

○ 예술공간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또따또가센터 사례를 살펴보게 됨. 부산 또따또가센터는 예술인들이 15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공간인데 센터 관계자 분을 초청해서 운영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함. 부산 또따또가센터도 괜찮은 사례이지만 인천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부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는 상황들이 존재함.

(3) 예술인 FGI 진행

○ 이런 과정을 거쳐 의제를 발굴하고,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FGI를 진행함. 예술인복지 FGI를 먼저 하고 유휴공간의 예술적활용 관련 FGI를 두 번째 진행함. 예술가들이 장르, 본인이 사용하는 매체, 개인적 활동과 단체 활동 등, 서로 다른 조건들과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 활동 그룹과 단체 활동 그룹을 나누어서 FGI를 진행함.

○ 개인 활동 예술가들은 교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함. 단체 활동 예술가들은 연습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생활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본인들이 쓸 수 있었던 연습공간을 이제는 생활문화동아리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힘들다는 의견들을 얘기함. 유휴 시설을 예술가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어떤 활용 방안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에 인천아트플랫폼이 개관한지 10년이 되었는데 다음 세대의 창작 공간, 다음 세대의 문화적 공간, 예술적 공간에 대한 상상을 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유휴 공간을 예술적으로 활용한 공간 사례들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들을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예를 들면 문학 분야에서는 도서관 안에 상주하는 예술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옴. 인천에서 인천 예술인들이 사용 가능한 유휴 시설에서 예술적 공간으로 활용해 본다면 화이트 큐브 보다는 블랙박스 형식이 좀 낫겠다는 의견도 나옴. 공연 중심의 단체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연습공간이 필요한데 연습공간은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의 분야에서 공유할 수 있는 연습공간 이야기를 함. 연습공간 일부를 개방하고 소규모로 공유 가능한 쇼 케이스 공간 같은 거를 운영하면, 만들어진 작품의 결과물을 갤러리나 무대 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연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만드는 접점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제시됨.

○ 인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요구 사항들을 정리해 보니까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소속연구소(무소속 랩)이라는 공간과 비슷한 형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됨. 일단은 열린 공간이고. 일부 공간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에 임대를 줘서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예술인들이 필요하다고 했던 공유 주방이

라든가, 간단한 교류공간 같은 것들이 유연하게 운영되는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음.

○ 3개월 동안 논의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음. 1. 연구조사가 필요함. 2. 인천시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 수립이 필요함. 3.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함. 4. 이런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함.

○ 내년에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사업이 '인천 예술인실태조사'라는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적 자원을 조사하고, 인프라를 조사할 계획임. 인프라 안에 예술교육기관이라든가 공연장, 전시장, 예술축제 등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조사할 계획임. 이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천 예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교류공간과 연습공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 예술인 실태 조사'를 내년에 인천시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인천시가 문화예술 정책을 정말 수립하는 데 객관적으로 쓸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지표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 정책을 세우고 예술인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들이 남아 있는 절차인데 그런 형식적인 수준의 정책수립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안에서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2020년에 인천시 사업계획 중에 하나가 유휴 시설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이 들어있음. 내용을 살펴보니까 유휴시설의 범위를 원도심 빈집, 폐교, 체육시설까지로 확장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술가들한테 공간이 필요하니까 예술적 공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예술인들을 늘 너무 멀고, 어둡고, 위험한 곳에 보내는지 하는 의문이 있음. 유휴 체육 시설 이외에 산업 시설도 있고 유휴 행정 시설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범위를 조금 다각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하고 싶음.

○ 인천시에서 유휴 시설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 안에서 정책의 명확한 목표를 조금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 어떻게 읽으면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을 하겠다는 거인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읽으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로 보이기도 하는데 두 개가 너무 잘 되면 같이 연동되면 좋겠지만

우선 이 안에서 목표를 굉장히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천보다 먼저 예술인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들을 참고해 보자면 부산 같은 경우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예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반딧불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술인 주거지원 정책은 주로 LH라든가 SH에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유휴 시설의 경우에는 예술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사업도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 안에서 인천시가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됨.

○ 예술인 창작을 통해서 인천의 문화의 수준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도 예술화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추상적인 방향으로 갈 거 같아서 이러한 계획안에서 단기적으로 얻을 기대효과는 뭐고 장기적으로 얻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함.

○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 사업들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천문화재단도 '점점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을 인천문화재단이나 인천시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임.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간운영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를 조금 다각화 할 필요가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의 성격과 목표와 비전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설정해 나가는데 인천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함. 인천은 문화예술 재정이 열악한 편이지만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 유관 사업들과도 연계하는 방식들을 고민해 보아야 함.

○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안에서 지역 예술현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의 성격, 공론의 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조사 연구 결과를 객관적 근거로 해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공론의 장 안에서 인천에 필요한 유휴 시설을 예술적으로 활용하는 공간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 조건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함.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위한 제언

공주형(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위한 제언

1. 논의의 배경과 필요
2. 논의의 과정과 내용
3. 논의의 실천과 과제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위한 제언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11 명의 분과 위원과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시각예술, 문학, 무용, 음악, 전통, 공연, 정책 등
✓창작, 기획, 연출, 연구, 교육 등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유휴공간 예술적 공간 활용 논의 경과

차수	논의 형식	일시	장소	논의 내용
1	정기 회의	07월 03일	재단 음악홀	분과 의제 선정
2	정기 회의	08월 07일	생활문화센터	분과 의제 논의 방식 결정 예술인 복지, 유휴공간
3	분과 회의	08월 21일	몬스터레코드	인천 유휴공간 활용 사례지 답사1
4	분과 회의	10월 11일	빈집은행	인천 유휴공간 활용 사례지 답사2
5	분과 회의	10월 24일	생활문화센터	부산 유휴공간 활용 사례 세미나
6	정기 회의	11월 08일	재단 음악홀	오픈 포럼 진행 사항 논의
7	예술인 FGI	11월 15일	카페 Talk	유휴공간 활용관련 예술인 FGI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 논의 배경과 필요
예술인실태조사

예술 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구분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기타
비율	46.5	27.1	10.7	2.4	1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예술인실태조사
인천예술인 실태조사 관련 사전연구 자료조사, p.10

✓예술인실태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불안정', '불규칙', '열악함' 등 표현이 등장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 논의 배경과 필요
인천 예술인 복지 플랜 : 예술인 실태조사와 복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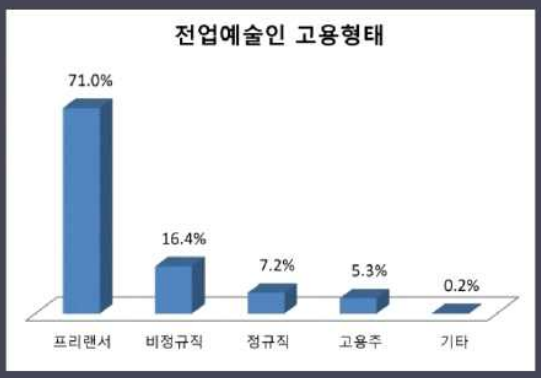

▲예술인이 거주하며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 ▲예술인이 일할 기회와 교류할 기회가 많은 도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역량이 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
▲예술인 창작 진흥 ▲예술인 공간 조성 ▲예술인 일자리 창출 ▲예술인 교류 활성화 ▲예술인 지위 보장 ▲예술인 역량 강화 등의 6개 전략과 24개 추진과제를 도출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 논의 배경과 필요

✓단발성 지원 사업이 아닌 인천예술인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인천에서 안정적,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중요함.
✓인천예술인에게 절실한 '공간'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함.

유휴시설 예술적 (공간) 활용 논의의 배경과 필요

✓~~창작 공간 조성~~, 예술적 공간 활용
✓기존의 창작 공간과는 다른 성격과 지향을 가진 유연성이 확보된 공간, 자생적 운영이 가능한 공간
✓인천예술인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 논의를 위해 널리 알려진 해외 사례가 아닌 인천 사례에 우선 검토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 논의 과정과 내용
사례 탐방 1

유휴 체육 시설, 몬스터레코드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 논의 과정과 내용
사례 탐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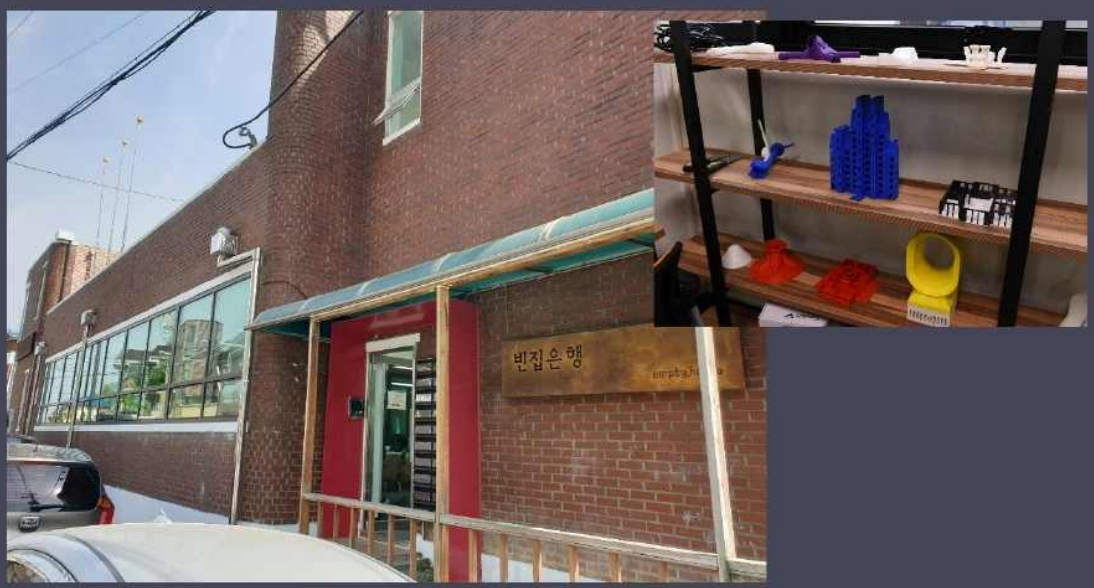

유휴 행정 시설, 빈집은행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 논의 과정과 내용
사례 세미나

부산시 또따또가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 논의 과정과 내용
인천예술인FGI

구분	성명	활동분야
A 그룹 (14:00 ~ 15:40)	길다래	시각
	김순임	시각
	이병국	문학
	이설야	문학
B 그룹 (16:00 ~ 17:40)	김성민	음악
	최유리	무용
	백승철	전통
	이은선	연극

- 예술창작분과 위원들의 추천(예술인 복지 관련) 및 예술인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한 예술인을 중심으로 FGI 대상 예술인 구성
- 그룹은 개인 기반 활동 작가(A), 단체 활동 예술가(B)로 구분하여 진행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 논의 과정과 내용
인천예술인FGI

○ 거주 및 작업 공간 상황
개인 기반 활동의 경우, 공유와 교류 공간이 필요함.
단체 활동 중심의 경우, 정식 연습공간을 갖춘 단체는 소수.
대부분 지역 내 연습공간을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임.

○ 유휴시설을 예술가들이 운영할 경우 활용 방안
인천 중구 외에 다른 권역(인천 내)에서의 공간을 상상해야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인천에서 인천아트플랫폼 이후의 창작공간)

○ 유휴공간을 예술적으로 활용한 참고 사례와 기타 제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도서관 상주예술인 프로젝트
화이트 큐브가 아닌 블랙 박스 형식
개방형 공유연습공간과 상시 운영 공유 쇼 케이스 공간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에 관한 상상
무소속연구소(Mososollab)

모든 공간은 오픈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2건의 임대계약건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1층의 프로젝트공간과 2층의 카페, 야외-데크마당과 가라지키친(Garage Kitche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약 28평의 전시와 공연 등이 가능한 공간과 약 2.5평의 팟케스트 녹음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레코딩룸이 있고, 독립된 영상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층 카페는 (약 50평) 스탠딩 행사시 100~150명 수용 가능하며, 70여석의 좌석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행사나 어쿠스틱 악기 공연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3층 무소속연구소 스튜디오는 (약 10평)은 10인 규모 소모임이 가능합니다. 야외/마당에서 스크리닝 및 공연, 야회행사가 가능하며 가라지키친(약5평)을 활용하여 음식과 함께 소규모 모임, 워크숍 가능합니다.(싱크대, 냉장고 등 구비) 각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활용하여 전시 및 공연, 행사 가능합니다.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위한 실천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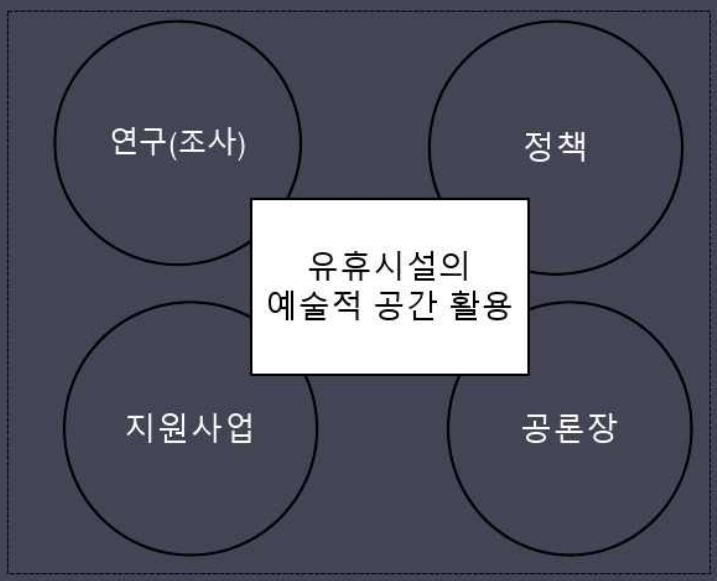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위한 실천과 과제
연구(조사), 인천예술인 실태조사

인적자원 조사: 예술인, 예술단체, 기획사 등 전수조사
인프라 조사 :예술교육기관, 공연장/전시장, 예술축제 등

인천시 문화예술정책(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포함) 수립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 가능한 실태조사
인적자원의 범위와 조사 방법, 인프라의 범주(교류공간, 연습공간) 검토
형식적 수준의 예술인 의견 수렴은 지향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위한 실천과 과제
문화예술정책, 유휴시설의 문화공간 활용사업

유휴시설 범위(원도심 빈집, 폐교, 유휴 체육 시설 등) 다각화
인천시의 문화예술정책 명확한 방향 설정
사업 우선 순위 설정, 재원 마련
-예술인 주거 안정/창작 활동 기반 마련
기대효과(단기, 장기)와 파급효과 구분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위한 실천과 과제
지원 사업,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사업

2019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
선정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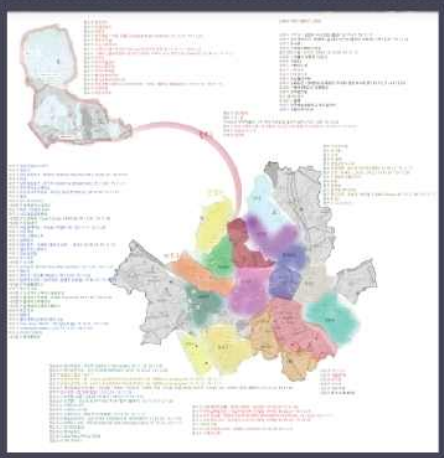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사업에서 '사람'으로, 단발성 프로젝트에서 예술인 지속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신생 공간, 자생 공간 지원 사업 다각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포함된 유관 사업(지역 문화 기반시설규현적확중과리 모델링/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프로그램 활성화) 등과 연계 모색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위한 실천과 과제
공론장, 인천예술 의제 관련 논의 지속 사업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위한 실천과 과제

【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 : 토론 1 】

〈지역 예술인 복지의 필요와 조건〉에 대한 토론

안희석 (루체뮤직소사이어티 대표)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예술인복지법이 탄생을 했고, 예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지만 여전히 예술인들이 사회에서 인정과 대우를 받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예술인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빈익빈 부익부도 심각하다. 이제 예술인의 삶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예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삶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반시민이 공감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예술가의 권리는 창작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예술가에게 창작의 권리는 일차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예술가의 환경보장의 차원에서 복지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중요한 권리로 볼 수 있다. 창작환경으로서 예술가 권리는 '노동'과 '복지' 사이에 있다.

예술가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 와는 상관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980년 10월, 유네스코는 제21차 총회에서 발표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예술가를 위와 같이 정의했다.

예술가의 권리 역시 예술가의 정의로부터 나온다. 예술가의 권리는 크게 창작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지적재산권의 권리로 구분해서 정의할 수 있다.

창작행위의 권리와 창작물의 권리는 예술가의 정의에 있어 '생활'과 '인정'이라는 의미를 충분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가의 권리가 예술 창작의 과정과 결과 모

두 보장받는 것이라면, 그 권리는 예술가들의 생활 속에서 마땅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창작’과 ‘생활’이라는 것은 예술가들의 권리에 있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생활은 창작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창작의 환경 혹은 조건이다. 예술가에게 창작 역시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 창작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가의 권리에 있어 창작을 위한 ‘노동’과 생활을 위한 ‘복지’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을 가난한 예술가를 구제하는 정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생활환경이 어려운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구제의 정당성이 ‘궁핍’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아주 협소한 시각에 그칠 수 있다.

예술가에게 복지정책은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분리될 수 없다. 창작활동은 어떤 점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예술가가 속한 공동체에 미적인 즐거움과 감성적인 행복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다.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면, 그 활동을 지탱하기 위한 생활환경의 조건들을 최소한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논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예술인의 복지는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창작의 권리와 함께 동일 선상에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천의 예술가들의 세대, 활동 조건, 장르별 복지에 관한 다른 이해와 의견들이 존재 하기에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학습하여 단순 반복하지 말고 지역 예술가들의 Needs를 반영하는 예술인 복지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 2019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 : 토론 2 】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위한 제언〉에 대한 토론문

이병국 (시인)

공주형 교수님의 「유휴시설의 예술적 공간 활용을 위한 제언」은 유휴시설을 어떻게 하면 예술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글입니다. 저에게 ppt 자료 형태로만 와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에서 논의한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예술인실태조사 등을 활용한 논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의 예술인이 인천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와 그 중에서도 '공간'에 주목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간이 단순한 창작 공간만은 아닌, 유연성이 확보되며 자생적 운영도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논의 과정 중 하나인 간담회에 저 역시 참여하여 공간 활용의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긴 하였으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공간 활용의 양상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님의 글을 통해 논의의 중심인 공간이 거주 및 작업 공간으로, 일종의 교류 공간과 연습 공간의 형태로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공간은 예술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인천 내의 여러 권역에서 형성된 공간을 상상하는 예술가들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방형 공유연습공간과 상시 운영 공유 쇼 케이스 공간이라는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공유'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예술인에게 제한된 용도의 쓰임은 아니라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시한 실천과 과제를 보면서 문화예술정책, 유휴시설의 문화공간 활용사업으로 유휴시설 범위를 다각화하고 인천시의 정책적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과 예술인의 주거 안정 및 창작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그 기대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말씀하신대로 지역문화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관 기간과의 연계를 전제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제 토론문이 뭔가 요약하고 있는 듯하긴 하지만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첫 번째는 공간 활용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일종의 예술인 복지 문제로 볼 수 있어 여기서 다룰 사안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제시된 자료인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술인이 예술 활동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문제로 확인되는 '불안정', '불규칙', '열악함'이라는 표현처럼 예술인이 예술을 창작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기본적 물적 토대는 상당히 불안정하여 창작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예술인의 창작을 진흥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그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러한 물적 토대를 도외시한 관념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확보된 공간을 자생적으로 운영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에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2. 아트플랫폼으로 인해 체계가 잡힌 중구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권역에서의 공간을 상상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천이라는 지역의 예술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할 때, 거점 구분이 되지 않는 보편적인 형태는 지양해야 할 것임은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중요한 점은 각 거점별 특화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공간 상황으로 인해 이는 차후의 문제로 미루어둬야 할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거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활용 가능성 판단의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처럼도 보입니다. 거점 별 공간을 어떻게 특화된 방식으로 구축하여 예술인과 시민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을지 논의된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3.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지역성에 대한 것입니다. 예술가에게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는 일은 자율성에 기반을 둔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요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요. 아마도 지역문화진흥 계획과 연계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종의 속지주의 혹은 속인주의에 의해 제한된 형태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원 받은 예술인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일 것입니다. 간담회 때 나온 말이기는 한데 문학 장르 쪽에서는 인천 내 작은 서점이나 독서 모임을 통한 교류, 민중 구술을 통한 기억 공동체 형성 등의 방안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인천이라는 지역과 예술인의 창작이 갈등 없이 맞물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활용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Ⅴ. 예술인복지 사업 사례

1. 국내 예술인복지사업 사례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6)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임.

○ 예술인의 권익재고, 예술인의 생활안전망 지원, 예술인의 가치 확산, 재단경영의 내실화를 전략목표로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영역은 창작역량강화, 불공정관행개선, 직업역량강화, 사회안정망구축, 예술활동증명 및 기반 조성으로 구성됨.

구분	내용
기 관 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동숭동) 소호빌딩 1층
설립년도	2012년
주요사업	창작역량강화, 예술활동증명, 불공정관행개선, 직업역량강화, 사회안전망구축 등
홈페이지	http://www.kawf.kr

【표 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요

① 예술활동기반 조성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으로 이를 위한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인패스, 예술인자녀돌봄지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함.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누적 인원은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57,417명으로 집계됨.

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2018」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인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적인원	6,654명	13.489명	20,526명	34,731명	46,659명	57,417명

【표 15】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누적 추이
(출처 : 20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6년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예술인패스사업'을 이관 받아 '예술인패스(Art Pass)' 카드 발급률을 높이고, 문화예술인패스 참여 기관 확대에 힘써왔으며, 2018년 12월 기준, 예술인패스 카드 소지자는 총 55,268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참여기관은 478개로 2% 증가함.

② 창작역량강화 : 창작준비금 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창작 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및 사회적 기여 확대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임.

-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2019년도 창작준비금의 지원규모는 1인당 300만원, 지원인원 5,500명임.
- 2018년 창작준비지원금 수혜자는 4,501명이며, 2013~2018년까지 총 19,729명의 예술인이 지원 혜택을 받음.

연도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인원
2013년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 지원	1인 300만원	1,831명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1인당 300~800만원	1,860명
2015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1인 300만원 (원로 200만원)	3,523명
2016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1인 300만원	4,000명
2017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1인 300만원	4,014명
2018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1인 300만원	4,501명
합계			**19,729명**

【표 16】창작준비금 지원 추이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5~2018연차보고서)

③ 직업역량강화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 예술로(路)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산하고 예술인의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예술과 사회의 상호 협력을 통한 창의적 사회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예술가 스스로의 예술적 개입으로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임.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을 선발하여 기업·기관에 1명의 퍼실리테이터, 3명 내외의 참여예술인을 매칭함.
- 퍼실리테이터는 사전에 기업·기관 이슈와 환경을 진단하여 기업·기관과 ‘예술적 개입’을 통한 협업주제 협의 및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참여예술인 매칭을 함께 진행함.
- 2015~2018년까지 4년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은 총 3,512명이며, 분야별 참여 예술인의 통계를 보면 미술이 1,38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극(712명), 영화(359명), 음악(324명), 문학(287명), 무용(148명), 사진(103명), 대중예술(87명), 국악(66명), 만화(34명), 건축(3명)의 순으로 참여함.
- 2018년도 참여 기업·기관은 232개로 서울은 116개, 경기는 51개 기업·기관이 참여했고, 참여 예술인은 1,000명 중 서울이 615명, 경기가 209명이 참여함.

장르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합계
2018년	58	383	24	1	84	16	51	240	105	28	10	1,000
2017년	83	372	30	1	92	18	43	210	114	29	8	1,000
2016년	83	428	32	1	106	25	43	171	92	22	11	1,014
2015년	63	206	17	-	42	7	11	91	48	8	5	498
합계	**287**	**1,389**	**103**	**3**	**324**	**66**	**148**	**712**	**359**	**87**	**34**	**3,512**

【표 17】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수혜 대상 인원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5~2018 연차보고서)

○ 2018년 처음 시행된 예술인역량강화 사업은 사회영역(기업·기관 등)에 확장할 수 있는 예술 활동으로 기업·기관의 구조 및 생리 파악과 학습공동체 모델을 통한 실습으로 예술인의 현장적응력 및 직업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임.

- 온·오프라인 강의 제공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함.
- 온라인강의는 총 8차시, 4가지의 주제(예술 현장의 이해에 대한 ‘예술적 개입’, 기

업의 기본 정보 습득을 위한 ‘문화마케팅’,문화 예술에서의 ‘공공성’, 예술현장의 ‘공동체성’역할)로 구성됨.

- 기업·기관의 현장실습을 통한 협업주제 파악 및 회의참석, 아이디어 제공의 기회를 제공함.

④ 불공정관행개선

○ 예술활동 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을 지원하는 사업임.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예술인 복 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 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법률상담, 심리상담, 성폭력피해 신고 상담을 제공함.
- 2018년 신문고 접수 건수 241건 처리, 법률상담건수 366건을 진행함.
-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은 28개 운영, 총 844명의 예술인 및 집단이 심리상담을 받음.
- 2018년 6월 20일 예술인성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개소,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지원 및 법률상담, 소송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을 지원함.

⑤ 사회안전망구축

○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를 개선하고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임.

-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의료비 지원이 있음.
- 2018년 산재보험 가입유지자 789명, 누적가입자 1,553명, 2018년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 1,138명, 2018년 사회보험료 지원 문화예술사업자(단체)63개로 집계됨.
- 의료비 지원은 2013년 시작으로 6년간 총 178명의 중증질환 예술인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음.

사업명	목적	지원내용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공	창작준비금 지원(1인당 300만원)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예술인 복 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종합지원 시스템 제공	(상담·신고·조사·조정·소송) 불공정 계약, 수익배분 거부·지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서비스 지원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예술인의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예술계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권익보호 특강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온라인 교육 운영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의 심리적·정신적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문 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맞춤형 심리상담 제공	[개인 프로그램]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12회 한도) [단체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비용 지원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지원	성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 예술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피해회복 지원	예술인성폭력피해 관련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지원] [피해지원 연계]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기타 관련기관 연계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예술과 사회의 상호 협력의 기회 제공	기업과 예술인의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매칭, 직업역량강화 직무교육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편입·유지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복지처우 개선	표준계약서 체결 기간 동안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40~50% 지원 (보수 179만원 한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사후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	직업 예술활동 중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을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 관련 사무 대행 납부 보험료 50~90% 환급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예술활동 의 복귀와 지속을 돕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 의료비 지원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최대 500만원)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 등)
예술인 자녀 돌봄지원	예술인에게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예술인 자녀 대상 돌봄센터 2개소 운영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려는 시스템	-
예술인 패스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국 문화예술기관 및 생활 속 공간 할인해택 제공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

【표 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내용

나. 경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

○ 경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예술인복지법」및 동시행령, 시행규칙,「경남예술인복지증진조례」에 근거하여 경남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 다양한 복지지원을 목표로 설립됨.

○ 경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사업영역은 크게 예술인복지사업과 예술인복지센터 업무 지원으로 구성되며, 예술인복지사업은 경남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경남청년예술인 파견지원,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 경남예술인 실태조사 등 이며, 예술인복지센터 업무 지원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행, 국가문화예술지원지스템,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상담 지원으로 구성됨.

구분	내용
기 관 명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위 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95 경남은행 신마산지점 3층 (월남동 1가 1-1)
설립년도	2019
주요사업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창작자금대출 지원, 예술활동증명
홈페이지	http://gcaf.or.kr/bbs/business.php?co_id=2050

【표 19】경남예술인복지재단 개요

① 경남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활동 준비를 위한 자금 지원함.

② 경남예술인 파견지원

○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예술인을 기업(기관) 등에 매칭 · 파견하여 예술적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업임.

③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이차보전)

○ 예술인 창작 재료비 및 창작공간 조성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사업임.

- 창작활동 재료비, 창작공간 조성 등 예술 활동에 한해서만 지원함.

④ 예술인복지센터 업무 지원

○ 예술활동증명(예술인패스)신청대행,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상담 지원,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상담을 지원함.

사업명	목적	지원내용
경남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 자금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경남 청년예술인 파견지원	청년예술인을 기업(기관)에 매칭·파견하여 문화예술프로젝트의 협업 기회 제공	기업과 청년 예술인의 예술 협업 활동 기회 및 매칭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제공	연 이자차액 2.5%보전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의 복지센터 업무 지원	신청대행 및 상담

다.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 2016년 9월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7년 11월 수립한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계획(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

○ 지역예술인의 권리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3대전략별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예술인복지증진사업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보장, 창작여건 개선 등 이전의 예술관련 진흥계획과는 다른 예술인 복지사업을 운영함.

구분	내용

시설명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위치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 전북예술회관
설립년도	2017
주요사업	예술인활동증명, 창작준비금지원, 특례보증지원, 자문서비스, 성폭력상담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www.jbaw.or.kr

① 창작준비금 지원

○ 예술인들의 활동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원로 예술인들에게 창작 기회를 지원함.

② 전라북도예술인특례보증지원

○ 제1금융권의 금융상품대출로 예술인들에게 보증을 지원함.

- 1인 최소 3 백만원부터 최대 5 천만원까지 4 %미만의 저리로 지원 가능함.

③ 찾아가는 사업 안내 서비스

○ 원로 및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안내서비스(설명회, 대행신청)을 운영함.

-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어려운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술인의 활동증명 확대 및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

④ 전문자문서비스

○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과 관련된 노무 · 회계 · 법률 · 홍보 · 행정사건에 관한 전문자문서비스를 제공함.

⑤ 전시기획프로젝트

○ 예술활동증명 신청자료 증빙을 위한 전시 기회 및 엽서 제작을 제공함.

- 최근 5년 예술활동 이력이 없는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시행함.

⑥성폭력상담신고·상담센터

○ 예술인대상 성폭력피해 관련 신고 · 상담창구를 운영함.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사업 내용

사업명	목적	지원내용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수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창작기회제공을 통한 창작활동의 동기 부여 및 창작안전망을 구축	창작준비금 지원
전라북도예술인특례보증지원	공공자원을 활용한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보완, 도내 예술인의 금융 안전망을 구축	1인 최소 3 백만원부터 최대 5 천만원까지 4 %미만의 저리 지원
찾아가는 사업 안내 서비스	예술인활동증명 확대 및 타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 참여율 확대	설명회, 대행신청
전시기획프로젝트	예술활동증명 신청자료 증빙을 통한 예술인활동증명 확대	전시 기회 및 엽서 제작
성폭력상담 신고·상담센터	성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 제공	신고 및 상담

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2013년 9월「부산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5년 부산예술인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정책수립용역을 거쳐 2015년「2020 부산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발표함.

○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산하 예술지원팀에서 부산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함.

구분	내용
시설명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설립년도	2016
주요사업	예술인 일자리 파견 지원,, 매칭데이, 반딧불이(빈집활용)사업, 예술인 실태 조사, 법률상담, 성폭력 대응센터운영
홈페이지	http://www.bscf.or.kr/01/11.php

① 복지코디네이터 운영

○ 예술인복지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신청대행,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②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새로운 서브잡(Sun-job) 영역을 제공하여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참여기업내 예술인을 파견하여 예술적 협업 및 프로젝트를의 기회를 제공함.

- 2018년 8월 기준 참여기업·기관 35곳, 참여예술인 40명임.

③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아트마켓 운영, 기업 및 기관 상담 부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함

- 2018년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참여기업·기관 35곳, 참여예술인 122명임.

④ 반디불이(빈집활용) 사업

○ 부산지역 내 빈집 등의 유휴공간을 발굴·확보하여 예술인의 창작 공간 및 시민문화향유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11곳 개소, 42명 예술인 입주, 시민향유프로그램을 운영함.
- 〈반딧불이 어울마당〉을 통해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

반딧불이 시민향유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시민향유 프로그램)
반딧불이 1호점	캘리그라피 캔버스 액자만들기, 벽화작업, 스냅백 만들기
반딧불이 2호점	비밀기지 만들기 프로젝트 1·2차
반딧불이 3호점	동시 낭독콘서트, 나의 인생 이모작이미지 만들기, 동시인 토크콘서트
반딧불이 4호점	안방극장 극작품 만들기, 몸으로 이해하는 연극
반딧불이 5호점	감사인사 전하기, 지역 어르신과 석고방향제 만들기
반딧불이 6호점	독서 세미나
반딧불이 7호점	주성치의 코미디영화 관람

⑤ 휴-안심 프로젝트 운영

○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중 발생하는 심리적, 정시적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상담, 힐링 캠프 등을 제공함.

⑥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 저작권, 법률 등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예술창작과 관련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함.

-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를 운영함.
- 1회차 : 저작권교육(36명), 법률상담(5명), 2회차 : 저작권교육(26명)을 진행함.

⑦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 복지 만족도 조사

○ 예술인 창작여건 및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부산예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발굴 사업임.

⑧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가칭) 운영

○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운영

-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함.

부산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사업 내용		
사업명	**목적**	**지원내용**
복지코디네이터 운영	예술인복지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신청대행,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복지 정책 및 지원사업 신청대행, 관리 및 지원 서비스
예술인 일자리 파견 지원 사업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새로운 서브잡(Sun-job) 영역을 제공하여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도모	기업과 예술인 매칭 및 협업 프로젝트 기회 제공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서브잡(Sub-Job)연계	아트마켓 운영, 기업 및 상담 부스 운영
반디불이(빈집활용) 사업	지역의 유휴공간을 발굴·확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시민 문화 향유 공간 제공	시민향유 프로그램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부산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사업 내용		
사업명	**목적**	**지원내용**
휴-안심 프로젝트 운영	예술인의 창작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심리상담, 힐링캠프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저작권, 법률 상담 프로그램

마. 한국연극인복지재단

○ 기초예술가로 연극인들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연극을 포기하지 않고 예술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 삶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극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함.

구분	내용
시설명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위치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9 (동숭동 1-141
설립년도	2005
주요사업	의료비지원, 일자리지원, 역량강화지원, 원로연극인자립지원, 정서지원, 무료법률상담
홈페이지	http://plays.or.kr/xe/

① 의료비지원

○ 매년 무료건강검진 지원, 긴급히 의료비를 필요로 하는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의료비지원(SOS.S.S 기금지원), 병원 협력을 통한 의료지원 등을 실시함.

② 일자리지원

○ 문화소외계층에게 관람, 체험, 청취 등 다양한 형태의 연극을 공연 또는 교육기회를 제

공함.

- 공연 또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연극', 새터민 아동,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적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도담도담연극교실', 연극인들의 직업경로를 다양화하는 '연극인놀이강사' 사업 등을 운영함.

③ 원로연극인자립지원

○ 원로연극인이 지역사회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공연을 통한 수입창출을 지원함

- 60세 이상의 원로연극인이 배우의 집에서 작품을 공연하는 기회를 제공함.

④ 역량강화지원

○ 직업연극인에게 필요한 생활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인문학강좌를 운영함.

- 연극인생존문학, 연극인인재교육아카데미, D.I.Y!연극인 워크숍의 프로그램을 제공함.

⑤ 정서지원

○ 연극인의 심리치유, 창작역량 및 직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상담소, 상호상담가 양성과정을 진행함.

⑥ 무료법률상담

○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변호사 그룹의 재능기부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함.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업 내용		
사업명	목적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연극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복지 실현	무료건강검진, 직접 의료비지원
일자리 지원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형태의 연극을 공연 또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지원	연극공연, 교육프로그램 사회공헌적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원로연극인 자립지원	원로연극인이 지역사회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공연을 통한 수입창출을 지원	공연 기회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업 내용		
사업명	목적	지원내용
역량강화 지원	직업연극인에게 필요한 생활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강좌를 통한 예술인의 역량 강화	인문학 강좌, 워크숍 프로그램
정서지원	연극인의 심리치유, 창작역량 및 직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교육프로그램, 상담소, 상담가 양성프로그램
무료법률상담	예술인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무료법률상담

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 무용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용예술인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창작활동 개선을 위한 선진적 지원제도 구축 사업을 진행함.

구분	내용
시설명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위치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4길 19 동숭비즈니스센터 201호
설립년도	2013
주요사업	상해치료비지원, 댄서스잡마켓, 직업전환컨설팅, 무용인한마음축제
홈페이지	http://www.dcdcenter.or.kr

① 상해치료비 지원

○ 무용예술인이 순수 예술 무용 공연과 관련한 연습 또는 공연 중에 상해를 당했을 경우 진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② 상해예방

○ 무용예술인의 부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순수예술 무용공연 또는 연습 시, 전 무용

수지원센터 소속 재활트레이너에게 운동치료 및 상해 예방 처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함.

③ 댄서스 잡 마켓 (Dancer's Job Market)

○ 순수 예술 무용 공연을 앞둔 무용단과 공연 출연을 희망하는 무용수를 연계해 무용수들이 역량 있는 무용단과 작업 기회 제공. 공개 오디션, 출연이 결정된 무용단의 무용수 출연료 일부 지원함.

④ 직업전환

○ 상해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무용을 직업으로서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은퇴를 할 수 밖에 없는 무용예술인이 무용 외의 직업을 선택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해외 예술인복지사업 사례

1) 트라이앵글(Triangle)[17]

○ 스페이스(SPACE)는 런던에서 예술가에게 알맞은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스튜디오 공급자로, 스페이스는 7개 자치구의 18개 건물에서 700명의 예술가를 지원함.

- 1968년에 설립된 스페이스는 런던 동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과 창조적 활동의 생산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
- 스페이스의 핵심 자금은 영국 예술위원회가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예술가들과 예술 애호가들이 더욱 쉽고 활동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사업에 복권기금을 지원함.

○ 트라이앵글(Triangle)은 2001년에 스페이스가 25년 동안 임차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빌려 예술가를 지원하고 있는 스튜디오이다. 빌딩에는 58개의 예술가 스튜디오, 갤러리, 프로젝트공간과 스페이스(SPACE)의 사무실이 입주함.

- 프로젝트 공간에서는 지역 기업들과 스페이스의 예술가들이 함께 하는 공동작업을 위한 무료 이벤트가 매주 개최되며, 스튜디오는 워버튼(Warburton) 거리에 있으며 99명의 예술가가 입주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

○ 트라이앵글 시설 및 기능

- 경력개발 지원: 콕핏 아츠(Cockpit Arts), 포코너즈 영화센터(Four Corners film centre) 및 포토퓨전(Photofusion)사진센터를 통해 스페이스에 입주한 예술가와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 등 창조적 사업을 하고 있는 400개 단체에 경력개발을 지원
- 공동작업 프로젝트 공간 : 디지털 훈련과정 지원 및 작업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장소제공
- 스페이스 갤러리는 신인예술가를 위해 매년 16회의 전시회와 프로그램을 제공

17) 서울문화재단(2016),「예술가의 창작공간」, pp.7-9.

-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8명의 트라이앵글 예술가들이 지역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

2) 글래스야드(Galssyard)[18)]

○ 글래스야드(Glassyard) 스튜디오는 민간 부동산개발업체인 스피리트본드(Spiritbond)와 애크미스튜디오 간의 공동 개발사업으로 스튜디오는 런던 예술대학(University of the Arts London)의 학생의 숙박시설로서 건물에는 258개의 학생 숙소와 24개의 스튜디오가 있음.

- 지상1층에 있는 대형스튜디오는 애크미스튜디오와 센트럴성마틴 대학교 간의 지속적인 협력활동의 일부로서 동 대학의 최근 졸업생 8명에게 임시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협력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임.

○ 글래스야드 스튜디오는 스피리트본드와 계약을 맺어 임차하여 사용하며, 창작공간 사업진행에서 애크미는 사업의 초기자본 투자대신, 스트리트 본드에 연 3%의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여 35년간 스튜디오 공간 임차계약을 체결함.

- 애크미는 건물의 임대공간 중 60%를 임차하여 스튜디오로 운영함.
- 1972년에 설립된 애크미스튜디오(Acme Studios)는 비상업적 활동을 하는 미술가들에게 저렴한 스튜디오 공간, 숙박시설 및 지원금을 제공, 런던 애크미스튜디오는 700명 이상의 예술가를 지원하고, 564개 스튜디오를 관리함.

○ 경력개발 지원 : 스튜디오 협력 프로그램으로써 예술대학 졸업생들은 스튜디오 임차료 보조 등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3) 세컨드 플로어 예술스튜디오[19)]

○ 세컨드 플로어 예술스튜디오(SFSA)는 미술 작가뿐만 아니라 공예 및 디자인 업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으로 세컨드 플로어 예술스튜디오는 455명의 예술가가 활동하는 작업공간과 화랑, 카페, 판화 작업실 등으로 구성됨.

18) 서울문화재단(2016),「예술가의 창작공간」, pp.13-15.
19) 서울문화재단(2016),「예술가의 창작공간」, pp.23-25.

○ 세컨드 플로어 예술스튜디오 시설 및 기능

- 생산 공간 : 템스배리어 인쇄스튜디오(Thames Barrier Print / Studio)는 인쇄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150명의 회원이 이용.
- 교육 및 능력 개발 : 지역사회 단체와 함께 하는 학습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세컨드 플로어 예술스튜디오 회원 및 기타 작가들이 주관하는 예술 교육과정을 위한 전용 교육공간이 있음.
- 문 네트워크 : 온라인 회원명부와 네트워크가 있음. 세컨드 플로어 예술스튜디오의 회원 작가 프로필을 위치정보와 함께 소개함. 주중에는 카페 및 회원 활동공간이 개방됨.

4) 에섹스하우스(Essex House)[20]

○ 에섹스하우스(Essex House)는 스트래트포드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뉴햄(Newham)자치구의회가 소유한 건물로 2004년부터 비어 있었으나, 매년 유지관리비는 소요되자 뉴햄자치구의 재개발 국장인 조 네그리니(Jo Negrini)는 보우아츠신탁과 협의함.

- 자치구의회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액의 명목상의 임대료만 부과하는 임대계약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치구의회는 자치구 재산을 보우아츠에 임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냄.
- 보우아츠(Bow Arts Trust)는 보우거리(Bow Road)에 주 사무소를 두고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사무실과 갤러리를 운영하며 교육자선재단으로서,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학습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술가들에게 능력향상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시설 및 기능

- 매너파크지역의 8개 학교와 함께 학습 및 참여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 확보

20) 서울문화재단(2016),「예술가의 창작공간」, pp.29-31.

- 경력개발 : 예술가간 전시작업 기회 및 평가 네트워크 등 모든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
- 보우아츠 수상작 교육 및 교육프로젝트를 통해 70개 학교에 교육 및 구직기회 제공
- 연간 진행되는 오픈스튜디오 이벤트와 보우아트 웹사이트를 통해 네트워크 기회 제공
- 스튜디오 건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술가들의 취업기회 확보
- 보우아츠 공공예술 서비스를 통해 자치구의회 및 민간의 예술작업과 연결

5) 프랑스 작가사회보장협회((Association for the Social Security Management of the Authors, AGESSA)

○ 1975년 예술저작들의 창조적 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 정부공인 비영리단체로 문학, 드라마, 음악, 무용, 시청각 예술, 사진분야에서 저작권을받고 있는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활동으로 획득한 수입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건강보험, 양육보험, 노후보험이 포함됨.

6) 프랑스 예술인의 집 (La Maison des Artistes)[21)]

○ 1952년 예술가들이 연대의 정신으로 창설한 “예술인의 집”(la Maison des Artistes)은 현재 국가의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기구로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들을 위한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단체임.

○ 화가, 조각가, 판화가, 만화가, 섬유예술가, 그래픽디자이너 등의 미술 분야의 종사자들이 이곳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행정지원, 창작을 위한지원, 예술가들 간의 연대를 위한 활동 지원함.
- 국립박물관에 대한 무료 출입증 발급
- 예술가들의 법적인 권리에 관한 법률 무료 지원 서비스

21) 예술경영지원센터(2007),「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 지원
- 원례회의를 통한 예술가들의 정보와 의견 공유

7)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 (Kunstlersozialversicherung: KSV)[22)]

○ 1981년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KSVG)이 통과되고, 1983년,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시에 예술가사회금고(Künstlersozialkasse)가 설립되면서 예술가사회보험제도 시행됨.

- 예술가사회금고는 예술가사회보험의 집행기관으로, 피보험자인 예술가와 사회보험 사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각각의 사회 보험 주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 1983년부터 자영 예술가들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요양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지불함.

- 보험금은 개인이 50%부담, 국가 20%, 저작권 사용자 30%를 부담함.
- 예술가의 성과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저작권 사용자로 고용주의 역할을 대신함.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독일 예술인 사회보험제도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미나」

Ⅵ. 유휴공간의 예술적 활용사례

3. 국내 유휴공간의 예술적 활용사례

가. 서울시 내 창작스튜디오

○ 서울시는 도시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정책의 일환인 '서울시 창작공간'조성사업을 통해 도시 곳곳의 유휴 공공청사나 구 공업지역의 폐공장, 상권이 쇠락한 지하상가 등 낙후된 지역의 공간을 예술창작공간으로 재생하는 아트팩토리 사업을 시행함.

1) 금천예술공장

○ 금천예술공장은 1978년 전화기 코일 공장에서 1991년 전화 명세서 인쇄공장((주)조은인쇄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개보수한 뒤 2009년 10월 서울시창작공간으로 개관함.

○ 예술공장이 자리 잡은 독산동은 상가와 공장, 공동주택, 저소득층 주민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공업단지' 및 '외국인 노동자 집중지' 의 지역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 금천예술공장의 설립으로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생활환경 개선, 지역내 문화적 부흥을 통한 도시재생, 예술가에게는 안정적인 창작공간 및 국제적인 교류를 지원함.

사업명칭	금천예술공장
사업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333-7
개관연도	2009년 10월
이전시설	인쇄공장
시설현황	면적 - 2,358㎡ / 연면적 3.070㎡
	구성 - 스튜디오 19실, 호스텔 5실, PS333(대형전시장), 미디어랩, 워크숍룸, 창고동, 샤워실, 세탁실 등
사업주관	서울시
운영주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geumcheon_main.do

(사진)금천예술공장 전경

(사진) P.S. 333(대형전시장)

사진출처:https://store.naver.com/attractions/detail?entry=plt&id=13194634&query=금천예술공장&tab=photo&photoIndex=undefined#_tab

사진출처: http://www.sfac.or.kr/html/artspace/geumcheon_facility.asp

□ **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 국제 입주 작가 정기공모

- 매년 1회 국내외 작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시각예술분야 예술가들에게 창작스튜디오를 제공하며 선발된 국내·외 시각예술분야 예술가들에게는 24시간 사용 가능한 창작스튜디오를 제공하며, 전문가지원 프로그램, 기획전시 등 창작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오픈 스튜디오 & 기획전

- 일 년에 한 번, 금천예술공장의 모든 스튜디오를 개방해 입주 예술가들의 작품과 작업공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오픈 스튜디오 기간 동안 스튜디오 오픈, 기획전시, 퍼포먼스 및 야외공연, 관객참여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예술가, 미술 관계자, 시민이 함께하는 페스티벌로 운영함.

(사진)'8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 기획전' 현장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i_sfac/221054715383

○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 예술과 기술 분야의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다양한 실험을 지원하며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제작비와 자문 등을 다방면으로 제공함.
- 격년으로 진행되는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는 다빈치 아이디어로 선정된 작품들과 국제적 작품들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국제 페스티벌임.

○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 문화예술분야의 주요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문화예술계 담론을 견인하는 국제학술대회임.

2) 신당창작아케이드

○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경기침체와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공실이 되어버린 중앙시장 지하상가 내 52개 점포를 40개 실로 개보수하여 2009년 10월 개관한 공방 중심의 창작공간임.

○ 서울시 컬쳐노믹스 사업이 추진되고, 99개의 점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어 있던 지하상가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40개의 창작 공방과 2개의 전시실, 공동작업장, 운영사무실, 운영창고가 들어서면서 2009년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공예중심 예술시장을 목표로 개관함.

○ 예술의 여러 장르 중 대중과 비교적 친밀하면서도 생활예술의 성격이 강해 시장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공예를 중심으로 창작 공방을 조성, 소품 위주의 공예작업은 낮고 협소한 지하상가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함.

사업명칭	신당창작아케이드
사업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19번지
개관연도	2009년 10월
이전시설	(구)중앙시장 지하상가
시설현황	연면적 - 5,057㎡
	구성 - 창작공방 35실, 공동작업장, 아트마켓 1실, 운영사무실 1실, 창고 2실
사업주관	서울시
운영주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indang_main.do

(사진) 신당창작아케이드

(사진) 아트마켓 '도시'

사진출처: http://www.sfac.or.kr/html/artspace/sindang_facility.asp#tlv2

□ 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 입주작가 창작지원

– 입주작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예분야 아트페어 공동 참가, 국내외 기관 연계를 통한 기획전시 개최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입주작가 프로모션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아트마켓

–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들의 아트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날 수 있는 판매 창구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전시를 매개로 한 창작활동 지원과 입주 예술가/단체 결과발표 등을 위한 전문 전시 공간임.

○ 재래시장 활성화_황학동별곡

– 황학동 지역주민, 시장 상인, 신당 입주작가가 함께 하는 중앙시장 가을축제로 전시 및 공연프로그램 등 황학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결과를 보여주는 지역 행사임.

(사진) 프로그램 '얼굴걸고 판다'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i_sfac/10150510019

(사진) '2018신당창작아케이드 황학동별곡'
사진출처: http://www.mediaissue.net/2485#0AES

3) 연희문학창작촌

○ 연희문학창작촌은 연희동 시사편찬위원회가 이전한 자리에 문학인 전용 집필실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구성된 4개 동(끌림, 흘림, 올림, 들림)을 2009년 11월 개관함.

사업명칭	연희문학창작촌
사업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203-1
개관연도	2009년 11월
이전시설	시사편찬위원회
시설현황	면적 - 6,915㎡ / 연면적 1,480㎡
	구성 - 4개동 (각 동 지하1층, 지상1층), 산책로, 야외무대
사업주관	서울시
운영주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yeonhui_main.do

(사진) 연희문학창작촌 1동(끌림)

(사진) 연희문학창작촌 2동(홀림)

http://www.sfac.or.kr/html/artspace/yeonhui_facility.asp

□ **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 예술지원사업(문학 장르)

- 경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속할 수 있는 문학 발전을 도모함.

○ 국내외 작가 레지던스 운영

- 총 4개 동 19개의 집필실을 운영하며, 국내 작가는 입주 유형(1개월/3개월/6개월)에 따라 정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해외 작가는 수시 모집을 통해 모집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함.

○ 아시아 문학창작워크숍

- 아시아 작가들을 초청, 국내 작가들과 창작의 과정을 나누고 아시아 문학의 지형도를 함께 그려보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각'도시'를 기반으로 한 문학 교류 프로젝트임.

○ 웹진《비유》

- 2017년 12월에 창간된 월간 문학 웹진으로 문학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실험과

기성과 청년 작가들을 아우르는 신작 발표를 진행함.

○ 연희극장

- 문학과 향유자들 간의 즐거운 소통을 위한 본격 문학 페스티벌. 낭독, 공연, 전시, 강의 등 창의적 문학 기반 콘텐츠를 발굴함.

4) 문래예술공장

○ 문래예술공장은 문래동 철재상가 자리에 창작지원센터의 기능을 가진 창작공간을 신축하여 2010년 1월 개관함.

○ 문래창작촌은 문래동 3가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형성된 자생적으로 발생한 예술인 마을로, 홍대, 대학로 등지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찾아와 비어있는 철공소 공간에 작업실을 만들며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회화, 설치, 조각, 디자인, 일러스트, 사진, 영상, 서예, 영화, 패션, 애니메이션 등의 시각예술 장르를 비롯하여 춤, 연극, 마임, 거리 퍼포먼스, 전통예술, 음악 등의 공연예술가와 비평, 문화기획, 시나리오,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작업하고 있음.

사업명칭	문래예술공장
사업장소	영등포구 문래동1가 30
개관연도	2010년 1월
이전시설	철재상가
시설현황	면적 - 1,017㎡ / 연면적 2,820㎡
	구성 - 스튜디오M30(공동작업장) 1실, 박스씨어터 1실, 포켓갤러리 1실, 녹음실 1실, 영상편집실 1실, 예술가호스텔 9실, 세미나실 1실, 회의실 , 운영사무실 1실
사업주관	서울시
운영주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mullae_main.do

(사진) 문래예술공장 입구

https://blog.naver.com/i_sfac/220974940358

□ **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O	O	O	O

○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 문래동 지역(문래창작촌 중심)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단체), 기획자, 지역예술생태계 구성원의 창작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술창작과 발표, 예술가 간 교류 및 지역주민, 인근 상공인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지원함.

○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Mullae Arts Plus)

- 다원예술, 전통기반창작예술, 음악·사운드 분야의 신작 예술가를 지원하며, 작품제작 지원금, 공간·장비, 멘토링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크리틱을 통해 향후 프로모션과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입체적 예술창작지원 프로그램임.

○ 문래창작촌 커뮤니티 및 프로모션 사업

- 문래창작촌의 대안공간 및 예술가(단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문화 커뮤니티 활동과 발표활동, 홍보, 프로모션을 지원·실행함.

(사진) 박스시어터, 스튜디오M30

https://blog.naver.com/i_sfac/220974940358

(사진) 예술가호스텔, 포켓 갤러리

https://blog.naver.com/i_sfac/220974940358

5) 서울예술치유허브

○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종암동 성북구보건소가 하월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방치된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여 창작공간으로 2010년 7월 개관함.

○ 보건소의 장소적 맥락을 고려하여 치유·소통·나눔의 공간을 지향하며, 커뮤니티로부터 집합적으로 창조되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27)를 목표함.

○ 2016년 4월 '서울예술치유허브'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술가와 치유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예술치유 특화 콘텐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함.

사업명칭	서울예술치유허브
사업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28-358
개관연도	2010년 7월
이전시설	성북구보건소
시설현황	면적 - 787㎡/연면적 1,997㎡
	구성 - 밴드실, 주민창작실, 예술다방, 스튜디오, 미술치료실, 회의실, 옥상공방, 기획연구실, 운영사무실, 샤워실, 휴게실
사업주관	서울시
운영주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eongbuk_main.do

(사진) 스튜디오#2

(사진) 스튜디오#4

http://www.sfac.or.kr/html/artspace/seongbuk_facility.asp

□ **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육성

- 멘토링, 입주 예술가 그룹 상호티칭 워크숍, 입주예술가 프레젠테이션, 예술가 자기성장 프로그램, 예술가와 치료사 케이스 스터디 등의 실행을 통하여 예술치유 전문인력을 발굴 양성함.

○ 예술치유 콘텐츠 확산

- '사회적 예술치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술치유총서 시리즈를 발간함.

○ 시민문화예술 향유

- 시민을 대상으로 목공예 프로그램 및 공간 대관을 제공함.

(사진) 연극으로 하는 비폭력 대화 워크숍

https://blog.naver.com/i_sfac?Redirect=Log&logNo=221308459146&from=postView

6) 서울무용센터

○ 홍은예술창작센터는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공간과 부지를 개축 및 신축하여 2011년 5월 개관함.

○ 2015년 6월, 무용 예술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리모델링하고 명칭을 서울무용센터로 변경한 뒤, 2016년 4월 재개관하여 무용창작지원사업과 국제교류사업, 예술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웹진[춤:in] 무용인을 위한 호스텔 및 연습실 운영을 통해 무용 생태계를 조망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함.

사업명칭	서울무용센터
사업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304-1
개관연도	2011년 5월
이전시설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시설현황	면적 - 1,070㎡/연면적 2,040㎡
	구성 - 무용연습실, 예술가의 방, 스튜디오 블랙, 스튜디오 화이트, 구상실, 커뮤니티룸, 주방, 세탁실, 샤워실, 야외마당 등
사업주관	서울시
운영주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dance_main.do

(사진) 해외거주 무용예술가를 위한 호스텔

https://blog.naver.com/i_sfac/220982062050

□ **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O	O	O	-

○ 무용 분야 예술지원사업

- 청년예술인,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의 예술작품 제작·발표를 지원함.

○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공연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

○ 국제교류프로그램

- 국내외 컨템포러리 댄스 및 퍼포먼스 아트 분야의 예술가들을 초청하고, 국내외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지원함.

○ 웹진[춤:in]

- 무용예술 분야의 정보서비스 제공, 창작물에 대한 아카이브를 위한 웹진을 운영함.

7) 잠실창작스튜디오

○ 잠실 창작스튜디오는 종합운동장 옆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이던 곳을 창작공간으로 2007년 10월 개관하여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운영하다 2011년 1월 서울시 창작공간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위탁운영을 시작함.

○ 장애 예술가들의 비장애인 예술가와 동등한 창작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창작공간 및 전시와 교육의 장소를 제공, 나아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도모, 복지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함.

사업명칭	잠실창작스튜디오
사업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2동 10번지
개관연도	2007년 10월
이전시설	(구)중소기업 제품전시장
시설현황	면적 - 472㎡ / 연면적 514㎡
	구성 - 개별 작업공간 12실, 다목적 전시장, 휴게실, 공동작업장
사업주관	서울시
운영주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jamsil_main.do

(사진) 잠실창작스튜디오 전경

http://www.sfac.or.kr/html/artspace/jamsil_facility.asp

□ **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입주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 정기공모를 통해 유망 장애 예술가를 공간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기획 전시 및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운영함.

○ 장애아동창작지원 〃프로젝트 A〃

- 매년 5명의 장애아동을 선발하여 예술전문가 멘토와 1:1 매칭을 통해 집중 멘토링을 지원함.

○ 장애 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 예술인(단체)의 예술창작 발표를 지원하며 매년 공모 및 심사를 통해 문학·시각·연극·무용·다원·전통 총 7개 분야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최저 5백만원에서 최대 15백만원의 지원금을 선정자/단체에 지원함.

(사진) 'MAKE! 스토리' 프로그램을 통해 화분을 만드는 아이들

https://blog.naver.com/i_sfac/10150300569

8)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서울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유휴시설(침출수 처리장)을 개조하여 2006년에 개관함.

사업명칭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사업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개관연도	2006년
이전시설	침출수처리장
시설현황	면적 - 연면적 2,071㎡
	구성 - 4개동, 스튜디오 25실
사업주관	서울시
운영주체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emananji.seoul.go.kr

(사진)스튜디오A,B
http://semananji.seoul.go.kr/korean/studio/main.jsp

□ **프로그램**

레지던시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 레지던스 프로그램

- 정기 입주 작가는 매해 11월에 입주하여 1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기 입주 작가를 위한 26실과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 작가의 단기입주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입주 작가들의 전시를 개최함.

○ 시민참여프로그램

- 시민참여프로그램인 난지열린미술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생대회와 입주 작가들이 진행한 미술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함.

나. 서울시 외 창작스튜디오

1) 창문아트센터

○ 창문아트센터는 11명의 대학교수와 전업 작가들이 폐교를 꾸며 만든 예술 창작 공간으로, 창문아트센터는 폐교를 창작스튜디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공간을 제공하면서 상호교류를 통해 창작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

사업명칭	창문아트센터
사업장소	경기도 화성시 수화동 236
개관연도	2000년 12월
이전시설	창문초등학교
시설현황	면적 - 1,344㎡
	구성 - 교실 13칸, 전시실, 스튜디오, 숙소, 공원, 체험교실. 자료실
운영주체	11명의 대학교수와 전업 작가
홈페이지	http://www.changmoonart.co.kr

□ **프로그램**

레지던시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O	O	O	O

○ 창문아트스튜디오, 환경조형연구소, 자연미술학교, 예절관, 갤러리 시설을 갖추고 지역과 연계된 문화·농촌 체험마을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함.

2) 인천아트플랫폼

○ 인천아트플랫폼은 일본우선주식회사(1888), 삼우인쇄소(1902), 금마차다방(1943), 해안동 창고(1933), 대한통운창고(1948) 등 개항기와 근대 건축물을 포함한 유휴 근대 문화유산과 인근 지역의 건물을 매입해 개조한 창작공간임.

○ 인천시는 2003년 '차이나타운 조성',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기획 단위 계획', '신

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함께 계획된 인천시의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이었던 ‘개항기 근대 건축물 보전 및 주변 정리’ 사업[23]의 하위 계획으로 인천아트플랫폼을 진행함.

사업명칭	인천아트플랫폼
사업장소	인천 중구 해안동 1가 10-1 32필지
개관연도	2009년 9월 25일
이전시설	일본우선주식회사(1888), 삼우인쇄소(1902), 금마차다방(1943), 해안동 창고(1933), 대한통운창고(1948) 등 개항기와 근대 건축물을 포함한 유휴 근대 문화유산과 인근 지역의 건물
시설현황	면적 - 건축면적 4,165.06 ㎡, 연면적 5,593.43 ㎡
	구성 - 2단지, 13개동 지하1층~4층, 인천생활문화센터, 전시장, 공연장, 운영사무실, 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관
사업주관	인천광역시
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inartplatform.kr

(사진) 인천아트플랫폼 전경

http://www.inartplatform.kr/sub/place.php?mn=info&fn=place&bn=hana_board_03&zest_bn=hana_board_02

□ **프로그램**

레지던시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23) 이 사업은 과거 개항기와 1930년대와 1940년대의 근대 건축물과 주변 경관을 정비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거점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레지던스 프로그램

- 예술가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고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뿐만 아니라 관람객은 예술가의 작업 공간을 방문함으로써 어렵게만 느끼던 문화예술에 한층 다가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오픈스튜디오·레지던스 특별전', '이론가·입주작가 1:1 매칭 프로그램'이 있음.

○ 교육 프로그램

-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문화예술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중 '판화+인천 이야기'는 인천지역 배경작품을 직접 스케치하고 판화제작을 실습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

○ 교류 프로그램

- 예술가들의 발전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국내외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감상의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생성된 프로그램으로 'ALA 문학 심포지엄', 강연회 등이 있음.

(사진) 문학페스티벌 '신바람 동네 책방'

https://blog.naver.com/incheontogi/221373417233

3) 삼탄아트마인

○ 삼탄아트마인은 민영 탄광으로서는 국내 최대규모인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2001년 폐광됨에 따라, 2013년에 이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인 (주)솔로몬 아트가 협력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함.

○ 독일의 폐광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된 졸페라인을 벤치마킹하여, 강원도 정선군 소유의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를 민간기업(솔로몬아트)에 무상대여 하고 정부의 '폐광지역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

사업명칭	삼탄아트마인
사업장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216-1
개관연도	2013년 5월
이전시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시설현황	면적 - 연면적 11,403.78㎡, 건축면적 6,307.69㎡
	구성 - 5개동, 지하1층, 지상4층 예술놀이터, 다목적실, 미술품 수장고, 레일바이뮤지엄, 레지던시 등
사업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정선군, (주)솔로몬 아트 협력
운영주체	(주)솔로몬 아트
홈페이지	http://samtanartmine.com/

(사진) 삼탄아트마인 전경

사진출처 : http://samtanartmine.com/bbs/page.php?hid=s0302

□ **프로그램**

레지던시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 아트레지던스

- 삼탄아트마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입주작가 지원은 물론이며 일반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광부 되기 프로젝트'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로 독특한 Story와 Concept이 있는 테마체험방으로 꾸며져 있어 세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세계미술품 수장고 1,2,3

- 탄광시절 광원들의 출퇴근이나 입욕 전후 옷을 갈아 입던 탈의실 겸 사물함이 있던 곳으로, 진귀한 세계 미술품이 모여 있는 수장고로 활용하여 소장품은 아프리카 원시미술품, 남미의 잉카문화 유물, 유럽, 중국. 일본 등 다양하며, 이들 작품은 각종 문화행사에 맞춰 테마별로 전시함.

(사진) 현대미술관 CAM1

http://samtanartmine.com/bbs/page.php?hid=s0302_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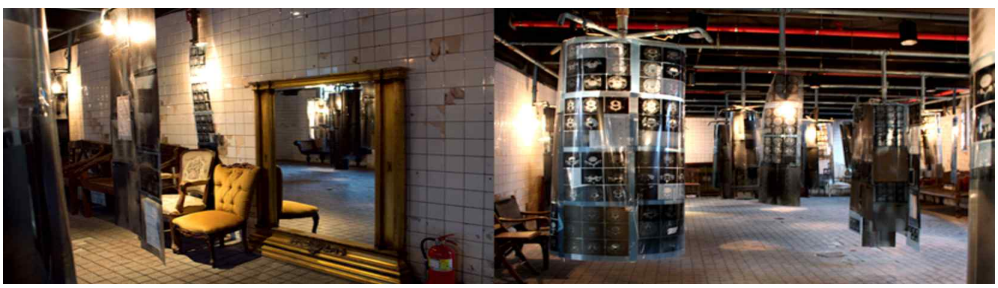

(사진) 마인갤러리4 (샤워장)

http://samtanartmine.com/bbs/page.php?hid=s0302_3

4) 후용공연예술센터

○ 후용공연예술센터는 2001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위치한 폐교였던 후용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연극공연 및 창작 공간으로 극단 노뜰[24]의 주도로 조성됨.

○ 폐교였던 후용초등학교는 원주 교육청으로부터 마을 공동체의 소유로 이전되어 있던 상태로 극단 노뜰이 후용초등학교를 작업과 생활공간으로 마을 문화공간화 작업을 마을 공동체에 제안하면서 후용공연예술센터로 개조함.

사업명칭	후용공연예술센터
사업장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1리 389번지
개관연도	2011년
이전시설	후용 초등학교
시설현황	120석 규모의 소극장, 2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 세미나실, 40여 명 수용가능한 숙소
사업주관	극단 노뜰
운영주체	극단 노뜰
홈페이지	http://hooyongartscentre.com

□ **프로그램**

레지던시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 아티스트-인-레지던시(Artist - in - Residency)

- 예술가 개인에게 스스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과 기반을 지원하는 거주예술가 프로그램으로, 초기에 기금사업 지원을 통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자발적 사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24) 극단 노뜰은 1993년 원주에서 창단된 극단으로 실험적인 공연과 새로운 연극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여러 실험과 작업들을 만들어가는 중견 극단이다.

5) 팔복문화예술공장

○ 25년간 방치되어 있던 팔복동의 카세트테이프 공장인 폐산업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예술플랫폼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함.

사업명칭	팔복문화예술공장
사업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43-3
개관연도	2017년
이전시설	쏘렉스공장
시설현황	연면적 - 14,323㎡
	구성 - 창작공간 : 공동작업실, 창작실, 공동실험실 전시공간, 예술교육공간, 서비스공간 : 카페테리아, 아트숍
사업주관	전주시, 전주문화재단
운영주체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palbokar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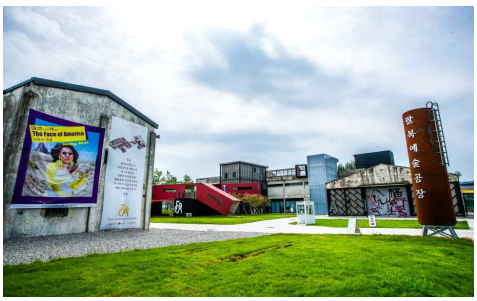

(사진) 팔복예술공장 전경
https://blog.naver.com/jcjkks/221353625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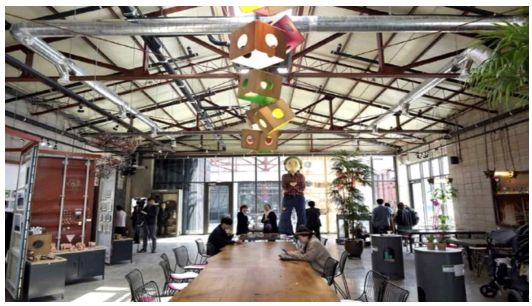

(사진) 팔복예술공장 A동 1층카페써니
https://blog.naver.com/wldms942/221341013407

□ **프로그램**

레지던시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 창작스튜디오

- 공동 작업장 및 LAB실 입주 예술가 공동 작업 공간 제공 및 창작지원 프로그램 및 전시, 공연 등 발표 기회를 제공하며, 전주 외 타 지역 정기 입주 작가에 한하여 숙소를 제공함.

○ 서비스 공간

- 팔복예술공장 A동 1층에는 예술가와 팔복동 주민이 협업하는 카페가 있음.

6) 광주대인예술시장

○ 1959년 5월 공설시장으로 문을 연 이래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문전성시를 이루던 대인시장은 고속버스터미널 및 도청이전으로 쇠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0년대 이후 예술가들이 빈점포에 하나둘씩 입주하면서 자생적으로 창작공간이 형성됨.

○ 2008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진행된 '복덕방프로젝트[25]'를 통해 작업 공간을 찾는 예술가들이 대인 시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400여명의 상인들과 100여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살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작가의 작품을 파는 예술시장이 열리면서 대인예술시장으로 이름이 바뀌 불림.

○ 이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광주광역시가 도심 재생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주변의 문화 예술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10년의 사업을 지원, 2013년~2015년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상인 중심의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이 시행됨.

사업명칭	대인예술시장
사업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10-9
조성시기	2008년
이전시설	대인시장 빈 점포
시설현황	면적 - 1,068㎡
	구성 - 6구역, 점포 수 401곳
사업주관	대인시장상인회
운영주체	대인시장상인회
홈페이지	https://daeinmarket.modoo.at/?link=e00llfy7

□ **프로그램**

레지던시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25) 복덕방프로젝트는 현장과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시장의 빈 점포, 빈 공간, 빈 시간을 찾아 내 미술가·기획자·인문학자·문화예술인의 집, 사무실, 연구소, 공공서비스 센터 등으로 활용한 사례다.

○ 별장프로그램

- 입주 예술가를 중심으로 시장 상인과 시민 판매상이 함께 판매하는‘별장’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으며, 200여 명의 셀러들과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인예술시장의 별장 프로그램에 참여함.

(사진) 대안예술야시장 '별장' 거리공연

(사진) 한 평 갤러리

http://m.shinmoongo.net/81331

7) 대구예술발전소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시범사업인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사업’에 대구가 선정됨에 따라, 2012년 대구예술발전소로 명칭을 바꾸고, 근대산업 유산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초제조창 별관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침체된 구도심에 예술창조 공간을 조성함.

사업명칭	대구예술발전소
사업장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31-12(수창동)
개관연도	2013년 3월
이전시설	대구 연초 제조창
시설현황	연면적 - 12,150㎡
	구성 - 전시실, 홍보전시실, 자료실, 공연장, 레지던시
사업주관	대구광역시
운영주체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daeguartfactory.kr

(사진) 대구예술발전소 전경

https://blog.naver.com/meetingrooom/90174355831

□ **프로그램**

레지던시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텐-토픽 프로젝트'는 젊은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선정된 예술가에게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등 전시프로그램과 창작 스튜디오 운영이 통합된 형태로 운영함.

8) 가창창작스튜디오

○ 1949년에 개교한 가창 초등학교 우록분교가 1994년 폐교되자,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하자는 대구 현대 미술가 협회의 제안을 대구광역시가 받아들여 지원하면서 설립함.

○ 2012년에 운영주체가 대구현대미술가협회에서 대구문화재단으로 변경되었으며,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지원으로 환경개선공사가 시행됨.

사업명칭	가창창작스튜디오
사업장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개관연도	2007년
이전시설	가창초등학교 우록분교
시설현황	면적 - 991.14㎡ / 작가스튜디오,전시실,옥외작업장,사무실,휴게실 등
사업주관	대구문화재단
운영주체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gcartstudio.or.kr

(사진) 가창창작스튜디오 전경

https://blog.naver.com/pieta999/221272112482

(사진) 가창미술아카데미의 예술프로그램 현장

https://blog.naver.com/daeguculture/221017768243

□ **프로그램**

레지던시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 국내·외 작가의 상호교류 프로그램

- 중국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내·외 작가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있으며, 시·도 문화재단 통합페스티벌 참여를 통한 작가 교류를 지원하고, 스튜디오는 작업 및 연구 공간, 숙소로 활용 가능함.

9) 부산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 부산 또따또가 거리는 원도심 지역의 재생을 위해 부산시가 2009년 중구 중앙동 인쇄 골목의 40계단[26] 주변 빈 상가를 중심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20여 개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300명 이상의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 예술가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함.

○ 또따또가 거리는 단순한 예술가의 작업공간 점유가 아닌 복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며, 예술가와 지역사회와의 결합을 지향함.

26) 40계단은 6.25 당시 모여든 피난민들의 판자촌이 있던 자리로 이곳에서 멀지 않은 부두를 통해 구호물자들을 취급하던 장터가 있던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장소임

사업명칭	원도심 창작공간(또따또가) 운영지원 사업
사업장소	부산시 중구 일대
사업기간	2010년-2012년(1차사업), 2013년-2015년(2차사업), 2016-2018(3차사업)
이전시설	인쇄골목의 40계단 주변 빈 상가
시설현황	구성 - 23개 건물 77실
입주현황	개인작가 38명, 단체 31개(198명) / 총 236명 활동 중
사업주체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사업주관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tttg.kr

□ **프로그램**

레지던시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 창작공간지원

- 입주 공간별 고유 창작 활동 및 전시, 공연, 출판, 상영회 등 발표 활동을 지원하며, 작가와 시민, 작가와 작가 사이의 커뮤니티 활동 및 협업 작업 환경을 조성함.

○ 교육프로그램 및 축제

- 입주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체의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함.
- 거리문화행사. 또따또가 예술문화 축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함.

○ 네트워크사업

- 국내외 교류를 통한 입주 예술가들의 활용영역 확장을 위한 아트페스티벌, 아트투어, 국제레지던시 프로젝트, 국제협업프로젝트, 국내 교류 프로젝트, 원도심 축전 등이 있음.

(사진)'또따또가 예술문화축전-노는척 하다' 개막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298&aid=0000072824

(사진) '또따또가 예술문화축전-노는척 하다' 거리공연
https://blog.naver.com/kkedoc/201436311160

10) 예술지구_p

○ 예술지구_p는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안료 생산기업 파낙스 그룹(구.욱성화학 주식회사)의 후원으로 사내 유휴 공간 부지를 활용하여 재개발됨.

○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파낙스가 부담했으며, 파낙스 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부산의 예술대안공간 '오픈스페이스_배'의 운영을 지원했고,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예술가들을 지원함.

○ 현재 예술지구_p는 시각미술, 사진, 미디어아트, 창작 스튜디오, 공연예술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 '예술지구_p'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음.

사업명칭	예술지구_p
사업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162 욱성화학
개관연도	2013년 12월
이전시설	욱성화학공장
주요시설	공연장, 녹음실, 세미나실, 전시장, 레지던시룸, 출력실, 촬영스튜디오
사업주관	파낙스 그룹(구 ㈜욱성화학)
운영주체	비영리 단체
홈페이지	http://artdp.org/

(사진) 예술지구_p 일부

https://blog.naver.com/onemanblues/220372285998

(사진) 예술지구_p 전경

http://www.sungyujin.com/m/1175

□ **프로그램**

레지던시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 레지던시 프로그램

-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작가들로 선정하며, 선정 작가들은 입주 기간(단기 3개월에서 장기 1년)동안 작업공간과 점심을 비롯한 여러 시설을 지원받음.

○ 교육프로그램

- 물감 제작 프로그램과 작가연구 프로그램 등의 전문 작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평면, 입체, 공예 등의 실기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민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

(사진) 시작을 끝내라 展 예술지구 ADP 1관_2017

https://blog.naver.com/lotuslhr/221140622679

(사진) 2016『공장 속 예술 놀이터

http://artdp.org/program/

11) 감만창의문화촌

○ 부산시는 2010년 7월 민선 5기의 출범과 함께 '창조도시 건설'을 주장하며 부산시 직제에 창조도시본부를 신설하고, 창조도시본부는 2012년 2월 14일 옛 동천처동학교 부지를 창의 문화촌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의 '창의문화촌@감만'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곧바로 폐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함.

○ 이 시기의 감만동 일대는 지리적,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 전체가 낙후되었으며, 지역 재개발의 무산 등으로 인해 지역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극대화되었던 시기로 동천초등학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과 새로운 문화형성을 구체화하고자 함.

사업명칭	창의문화촌@감만 프로젝트
사업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개관연도	2013년 11월 20일
이전시설	동천초등학교
시설현황	면적 - 연면적 6,257㎡
	구성 - 창작공간 14실, 교육실 등 부대시설 공연 연습공간 등
사업주관	부산시
운영주체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bscf.or.kr/10/02.php

(사진) 감만창의문화촌 전경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dbTS&articleno=185

□ 프로그램

레지던시		전시 및 공연	지역연계
주거	작업실		
-	○	○	○

○ 감만 창작공간 네트워크 워크숍

- 국내외 창작공간 네트워크 워크숍 등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함.

(사진)감만동 마을잔치_단심줄놀이

(사진)2014감만아트페스티벌

http://webzine.arko.or.kr/load.asp?subPage=10.View&searchCate=02&pageType=List&page=6&idx=425

4. 해외 유휴공간의 예술적 활용사례

(1) 중국 베이징 798예술구

○ 1990년대에 들어 중국 베이징시의 2차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빈 공장들이 늘어났고 공장 대부분은 유휴 상태가 많았으나 1995년 중국중앙미술대학교의 조각전공 교수와 강사 등이 3000여 제곱미터의 방치된 창고를 임대하면서 798공장은 점차 예술지역으로 변화하기 시작함.

○ 2002년부터는 798공장의 소유주인 칠성그룹이 공장 내 빈 건물의 활용도를 높기 위해 공장 일부의 빈 건물을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였고, 이후 가난한 예술가들

의 입주 신청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798예술구를 형성함.

○ 2007년부터 798예술구의 예술축제는 민간에서 출발되어 점차 공공성을 띠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798예술구는 시설이나 문화 환경 측면에서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기 시작함.

사업명칭	북경 따산즈 798 예술특구
사업장소	베이징시 조양구(朝陽區) 동북쪽에 위치한 다산즈(大山子)지역
조성시기	1990년대
이전시설	베이징화북무선전연합기자재공장(군수공장지역)
시설현황	면적 - 약 22만㎡
	구성 - 300여 개의 갤러리와 작업실·미술카페 등
사업주관	최초 민간으로부터 자생적 형성
운영주체	지방정부, 국유기업 합동 관리
홈페이지	http://www.798ar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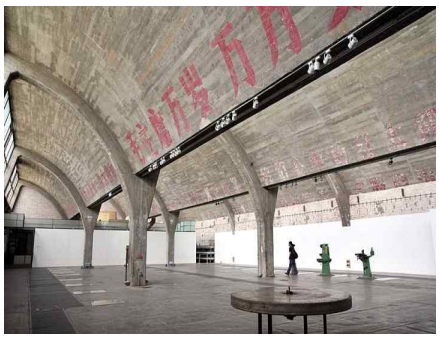

(사진) 798예술구 스튜디오의 내부

(사진) 798예술구 스튜디오의 일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85121&memberNo=1166&vType=VERTICAL

2) 프랑스 프리쉬 라 벨 드 메(Friche la Belle de Mai)

○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1990년에 문을 닫은 세이타(Seita) 주식회사는 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던 120,000㎡의 거대한 공간으로 마르세유 3구 쌩 샤를르 역 뒤에 소재하며, 건물 옆으로 철로가 길게 들어서 있는 동네로 빈 곳으로 남겨져 있던 이곳에 연극집단 SFT(system friche theatre)가 입주하면서 갈 곳 없는 예술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함.

○ 예술인들이 점점 모이자, 마르세유시는 12만㎡에 달하는 담배 제조공장 부지를 1992년에 매입하고 일부 예술단체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했고, 현재 프리쉬 라 벨 드 메에는 예술단체, 기

업, 예술제 작자, 작가 등 1천여 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상주하고 있음.

○ 예술레지던시와 아틀리에, 연습실, 전시장, 예술단체 사무실이 모여 있는 프리쉬 라 벨 드 메는 산업유산과 경제, 예술을 새롭게 결합해내며 지역문화발전의 중심 역할을 함.

사업명칭	프리쉬 라 벨 드 메(Friche la Belle de Mai)
사업장소	41 Rue Jobin, 13003 Marseille, 프랑스
조성시기	1990년대
이전시설	담배제조공장
시설현황	면적 – 12만 ㎡
	구성 – 1구역 도시 유적 아카이브 시설 2구역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설 3구역은 1천여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레지던시, 70여개 예술단체의 사무실, 연습장, 전시·공연장
사업주관	최초 민간으로부터 자생적 형성, 마르세유시
운영주체	사회적기업 '프리쉬 라 벨 드 메'
홈페이지	http://www.lafriche.org

(사진) 프리쉬 라 벨 드 메 모습

http://www.lafriche.org/en/la-friche-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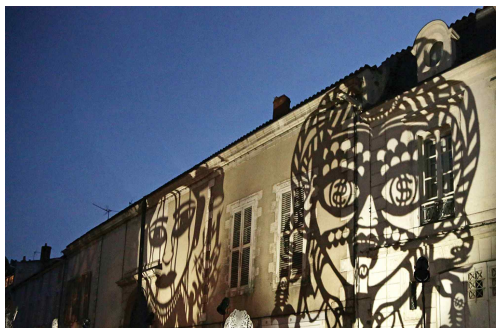

(사진) The Performing Arts Hub

http://www.lafriche.org/en/news-and-projects/the-performing-arts-hub

3) 영국 커스타드 팩토리(Custard Factory)

○ 버밍엄의 공장지대에 위치한 빵을 만들었던 커스타드 공장(the Custard Factory)은 1980년대 이후 커스터드 팩토리(Custard Factory)는 폐쇄된 채 방치돼 흉물로 남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공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일대가 빈부격차, 실업, 슬럼화로 쇠락하기 시작함.

○ 개인 부동산업자 베니 그레이(Bennie Gray)가 이 공장을 인수하여 500개의 스튜디오

형태의 작업실을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시작하면서 커스터드 팩토리(Custard Factory)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함.

○ 공간은 갤러리, 패션숍, 고미술품 가게, 춤 연습장, 화실, 음악 창작실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활동이 점점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소규모 클러스터 형식의 다양한 예술장르가 공존하는 문화단지를 형성하고 있음.

사업명칭	커스타드 팩토리(Custard Factory)
사업장소	Gibb street, Birmingham, 영국
조성시기	1988년
이전시설	커스타드 공장
시설현황	면적 – 60,702 m2
	구성 – 500개의 작업실
사업주관	개인 부동산업자 베니 그레이(Bennie Gray)의 임대사업으로 시작
운영주체	SPACE
홈페이지	http://www.custardfactory.co.uk

(사진) 커스타드 팩토리 전경

http://www.999photos.com/uk/custard_factory.php

4) 독일 우파 파브릭(Ufa Fabrik)

○ 우파 파브릭은 1918년 설립된 독일 최대 영화사인 우니베르줌영화사(Universum FilmAktien Gesellschaft, UFA)의 필름현상소였던 곳으로 베를린 장벽의 설치로 인해서 문을 닫고 30년간 방치되던 공간을 서베를린에 거주하면서 징집을 피해서 온 예술가들이 개조하여 사용하기 시작함.

○ 독일 전역에서는 1970년대에 공간의 무단점거가 다반사였는데, 1979년 6월 이곳의 공간 무단점거는 평화로운 재가동의 시도로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독일 전역

의 움직임과 함께 대중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무단점거 시작 3주 후 베를린 시의회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음.

○ 독일 베를린 남쪽 시내 중심가 포츠담 템펠호프에 위치하고 있는 우파 파브릭(Ufa Fabrik)은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거주형 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학교, 주민센터 등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사업명칭	우파 파브릭(Ufa Fabrik)
사업장소	Viktoriastraße 10-18, 12105 Berlin, 독일
조성시기	1979년
이전시설	우니베르줌영화사(Universum Film Aktien Gesellschaft)의 필름현상소
시설현황	면적 – 18,566㎡
	구성 – 공연장, 게스트하우스, 대안학교, 식당, 빵집 등
사업주관	우파 파브릭 지역공동체
운영주체	우파 파브릭 지역공동체
홈페이지	https://www.ufafabrik.de/en

(사진) 우파 파프릭 전경
https://www.ufafabrik.de/en/14995/vision.html

(사진) 우파 파브릭 야외공연장
http://neue-nachbarschaft.de/immovielien/ufafabrik-berlin/

5) 프랑스 르 썽꺄르트(Le Centquartre, Le 104)

○ 프랑스의 르 썽꺄르트(Le Centquartre, Le 104)는 1870년 이전에 옛 도살장이었다가 1873년 장례식장으로 지어진 건물을 2001년 파리 시장 베르트랑 델라노에(Bertrand Delanoe)가 장례식장을 도시 개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예술센터로 전환한 시설임.

○ 장례식장이 위치해 있던 파리의 19구 지역은 비교적 이주노동자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창작공간과 인근의 공원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이루기 위해 역사적 가치를 가진 장례식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함.

○ 르 썽꺄르트는 연극, 춤, 음악, 비디오, 요리, 디지털 등 예술 분야의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분야를 지원하며,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을 선발하여 아뜰리에와 작업 활동을 지원하며, 어린이집도 운영함.

○ 지역 단체들과 연계하고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리 퍼블릭 인큐베이터 Agoranov와 파트너십을 맺어 예술과 관련된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르 썽꺄르트에서 진행하는 '인큐베이터 104'는 세 개 기업 및 기구, 즉 창작공간 104와 웹 관련 회사인 '실리콘 쌍티에(Silicon Sentire)', 사회혁신을 주제로 연구하는 포럼인 '모더니티 행동 포럼(Forum d'Actions Modernites)' 등이 파트너십을 맺고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자체 수입모델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존재함.

사업명칭	르 썽꺄르트(Le Centquartre, Le 104)
사업장소	5 rue Curial, 75019 Paris, 프랑스
개관연도	2008년
이전시설	장례식장
시설현황	면적 – 연면적 35,000㎡ / 부지 39,000㎡
	구성 – 상업시설, 공연장(최대 400명 수용 가능), 창작 스튜디오 16개, 사무실 18개, *중앙통로, 지하 전시장 등
사업주관	파리시
운영주체	파리시
홈페이지	http://www.104.f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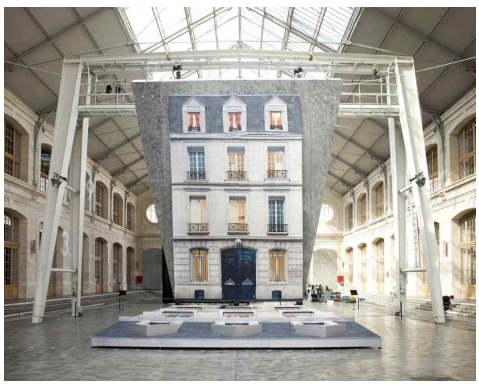

(사진) Bâtiment, 2004, print, mirro

(사진) Urban Fragments,2018

https://www.galleriacontinua.com/special-projects/104-le-centquatre-36 http://overtheinfluence.com/vhils-takes-over-paris-with-two-solo-shows/

【 참 고 문 헌 】

1.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2),「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8),「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2018),「2018 예술인실태조사」

부산문화재단(2018),「부산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 복지 만족도 최종보고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16),「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16),「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4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18),「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18),「고용보험법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대한민국 정부(2017),「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서울문화재단(2016),「예술가의 창작공간」

성북구 노동권익센터(2018),「공연예술분야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 연극분야를 중심으로」, 김현호 외 4인

예술경영지원센터(2007),「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인천광역시(2019),「2030 미래이음 문화관광체육 계획」

인천연구원(2018),「인천예술인복지플랜」, 최영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5),「2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6),「20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7),「20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8),「20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2. 연구논문

한석진, 김선애(2017)「공연예술인을 위한 해외복지제도 조사 및 분석 : 수혜대상 가입조건을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 17권 1호

3. 보도자료

문화관광체육부, 2019. 12. 2.「예술인 복지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2019.12.24.,「동력 잃은 국정과제...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제자리걸음'」

4. 자료집

김태현(2019),「경기도 안산시 예술인 기본소득 추진안」

인천문화재단(2019),「인천문화포럼 예술창작분과 오픈포럼 자료집」, 채은영.공주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독일 예술인 사회보험제도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미나」

5. 인터넷 사이트

〈예술인복지지원기관〉

경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 : http://gcaf.or.kr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http://www.bscf.or.kr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 http://www.jbaw.or.kr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 http://www.dcdcenter.or.kr

한국연극인복지재단 : http://plays.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http://www.kawf.kr

〈국내 예술창작공간〉

가창창작스튜디오 : http://www.gcartstudio.or.kr

감만창의문화촌 : http://www.bscf.or.kr/10/02.php

광주대인예술시장 : https://daeinmarket.modoo.at/?link=e00llfy7

금천예술공장 :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geumcheon_main.do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 http://semananji.seoul.go.kr

대구예술발전소 : http://www.daeguartfactory.kr

문래예술공장 :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mullae_main.do

부산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 http://www.tttg.kr

연희문학창작촌 :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yeonhui_main.do

삼탄아트마인 : http://samtanartmine.com/

서울예술치유허브 :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eongbuk_main.do

서울무용센터 :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dance_main.do

신당창작아케이드 :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indang_main.do

예술지구_p : http://artdp.org/

인천아트플랫폼 : http://www.inartplatform.kr

잠실창작스튜디오 :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jamsil_main.do

창문아트센터 : http://www.changmoonart.co.kr

팔복문화예술공장 : http://www.palbokart.kr/

후용공연예술센터 : http://hooyongartscentre.com

〈해외 예술창작공간〉

중국 베이징 798예술구 : http://www.798art.org

프랑스 프리쉬 라 벨 드 메(Friche la Belle de Mai) : http://www.lafriche.org

영국 커스타드 팩토리(Custard Factory) : http://www.custardfactory.co.uk

독일 우파 파브릭(Ufa Fabrik) : https://www.ufafabrik.de/en

프랑스 르 썽꺄르트(Le Centquartre, Le 104) : http://www.104.fr/en

【 부록 1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21호, 2018. 10.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3.]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 10. 16.〉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개정 2018.

10. 16.〉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 12. 30., 2018. 10. 1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2. 3.]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본조신설 2013. 12. 30.]

[제목개정 2016. 2. 3.]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투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본조신설 2016. 2. 3.]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0.〉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30.〉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장 보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3.]

제6장 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본조신설 2018. 4. 17.]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 4. 17.〉]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2. 3.〉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 4. 17.〉]

부칙 〈제15821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2 】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9-29 조례 제 57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3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8-02-26 조례 제 5937호
(일부개정) 2019-02-20 조례 제 60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 지원 및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02-2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청년고용

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③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2-20〉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02-20〉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 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02-20]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02-2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02-20]

부 칙 〈2018-02-26 조례 제5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부칙 〈2019-02-20 조례 제6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4 】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17-06-05 조례 제 58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6-05 조례 제5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2019 인천문화재단 문화정책 기획·연구과제 3 】

인천 예술인실태조사 관련 사전 연구

- 예술인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및 예술인복지 사례조사 -

발 행 인 최 병 국
발 행 일 2019년 12월 27일
발 행 처 (재)인천문화재단
22313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95 (항동 5가 13)
전화 032-455-7100 홈페이지 www.ifac.or.kr

ⓒ (재)인천문화재단 2019
※ 연구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서 인천문화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인천예술인
실태조사 관련 사전 연구

비매품/무료
93600
9 788992 678513
ISBN 978-89-92678-51-3